

www.kipf.re.kr

세법연구 25-02

디지털자산 시대의 NFT 과세제도

2025. 9.

김문정 · 홍성희 · 박하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문 정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홍 성 희 공인회계사

박 하 영 세무사

목 차

I. 서론	1
II. NFT의 개관	4
1. NFT의 의의 및 활용 유형	4
가. NFT의 개관	4
나. NFT의 활용 사례	8
2. NFT의 거래구조	12
가. NFT의 민팅	12
나. NFT의 양도	14
III. 우리나라의 NFT 과세제도	17
1. 개요	17
가. NFT의 법적 성격	17
나. 그 외 법적 고려사항	21
2. 소득세 과세제도	23
가. 증권에 해당하는 NFT	24
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	25
다. 개별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는 NFT 중 게임 NFT	25
라. 그 외 NFT	26
3.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31
가. 기초자산이 실물 미술품인 NFT	32

나. 기초자산이 디지털아트인 NFT: 크립토아트 NFT	33
4. 조세행정	34
IV. 주요국의 NFT 과세제도	36
1. EU 지침	36
가. NFT 규제	36
나. 부가가치세	38
다. 조세행정	49
2. 미국	50
가. NFT 규제	50
나. 소득세 과세제도	53
다. 소비세 과세제도	59
라. 조세행정	64
3. 일본	67
가. NFT 규제	67
나. 소득세 과세제도	68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75
라. 조세행정	78
4. 독일	79
가. NFT 규제	79
나. 소득세 과세제도	81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84
라. 조세행정	88
5. 호주	89
가. NFT 규제	89
나. 소득세 과세제도	90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93

라. 조세행정	95
V. 국제비교	96
1. NFT 규제	96
2. NFT 과세제도	98
가. NFT 소득세 과세제도	98
나. NFT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106
다. 조세행정 관련	111
VI. 결론 및 시사점	113
1. NFT의 분류	113
가. 규제 측면	113
나. 조세 측면	114
2. NFT의 소득과세	115
3. NFT의 부가가치세 문제	118
4. 조세행정 관련	120
참고문헌	121

표 차례

〈표 II-1〉 FT와 NFT의 구분	6
〈표 II-2〉 분야별 대표적 NFT 활용 사례	10
〈표 III-1〉 실물 미술품 NFT와 크립토틀 NFT의 과세 범위 비교	30
〈표 III-2〉 「부가가치세법」상 실물 미술품 NFT와 크립토틀 NFT의 과세 여부 ..	34
〈표 IV-1〉 일본: 「소득세법」상 암호자산 거래 소득 구분	70
〈표 IV-2〉 일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NFT와 소득 구분	71
〈표 IV-3〉 일본: 사례별 NFT의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75
〈표 IV-4〉 일본: NFT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크립토틀 NFT 사례)	78
〈표 V-1〉 주요국의 NFT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	100
〈표 V-2〉 주요국의 크립토틀 NFT 및 실물미술품 NFT 매매에 대한 소득세 과세	103
〈표 V-3〉 주요국의 게임 NFT 매매에 대한 소득세 과세	106
〈표 V-4〉 주요국의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	107
〈표 V-5〉 주요국의 크립토틀 NFT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0

그림 차례

[그림 II-1] NFT 거래흐름	12
[그림 III-1] NFT의 분류	20

I. 서론

- 대체불가능토큰(이하 ‘NFT’) 시장은 2022년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였으나 이후로 침체기를 겪고 있음
 - NFT는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의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작품, 음악, 게임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거래되었음
 - 2021년과 2022년 초에 걸쳐 전 세계 NFT 시장은 투자·투기 수요로 인해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가격 급락과 거래량 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음
 - 2022년 NFT 거래량은 572억미국달러, 판매건수는 1억 2,170만건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거래량 및 판매건수에서 2020년 이후 최저치(거래량 137억 달러, 판매건수 4,980만건)를 보여 시장의 열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임¹⁾
 - 글로벌 금융시장 악화,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반적 침체, 시장과열에 따른 투기적 거래 증가, 실패한 프로젝트의 증가 등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침체기를 지나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의 기술적 중요성과 응용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는 초기 투기적 프로젝트를 넘어서 활용 범위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NFT 기술이 갖는 유용성 및 실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예술품·수집품 분야를 넘어 게임, 멤버십, 입장권, 인증서, RWA(Real World Asset)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²⁾

1) DappRadar, “Dapp Industry Report - 2024 Overview,” <https://dappradar.com/blog/dapp-industry-report-2024-overview> (accessed August 11, 2025)

2) Cointelegraph, “What is an NFT, and how does it work,” <https://cointelegraph.com/learn>

- K팝 시장에서 NFT 사업은 2021~22년 큰 관심을 받았으나 수익성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가 중단된 바 있으나, 2024년에는 게임 요소와 수집 가치를 강화한 신규 프로젝트들이 등장함에 따라 수익 창출, 저작권 보호, 팬 커뮤니티 문화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NFT의 유용성이 다시 주목 받고 있음³⁾
- NFT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NFT의 세법상 성격 및 과세방법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NFT와 기술적 성격이 유사한 가상자산과의 관계, NFT의 성격 및 세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⁴⁾
 - 또한 NFT 기술로 인해 크립토티 NFT 등의 거래가 새로이 등장하였으나 과세 여부 및 과세방법이 불분명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NFT 시장이 본격화되기 전에 NFT의 성격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NFT의 개요 및 활용 유형에 대해 기술함
 -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NFT에 대한 법적 성격 및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측면의 과세제도에 대해 기술함
 - NFT의 규제 측면의 분류 및 NFT와 관련된 주요 법적 논의사항, 소득세와 부

/articles/what-are-nfts-and-why-are-they-revolutionizing-the-art-world (accessed August 11, 2025); 이호 외(2024), p. 360; DappRadar, “NFT Market Nears \$7B Milestone. Is the Bull Back?,” <https://dappradar.com/blog/nft-market-cap-nears-7b-is-the-bull-back> (accessed August 11, 2025)

- 3) 한국저작권위원회(2024c), pp. 19~22.; 『한국일보』, 「[홍혜민의 B:TS] K팝 시장과 NFT의 미래」, 2022. 3. 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213240002826>, 검색일자: 2025. 9. 12.; Cryptonews, “K-pop Giant and BTS Label HYBE Abandons Blockchain Project,” <https://cryptonews.com/news/k-pop-giant-and-bts-label-hybe-abandons-blockchain-project/> (accessed September 12, 2025)
- 4) 『조선비즈』, 「정부, NFT 과세 방안 검토 착수…올해 중 최종案 확정」, 2021. 8. 12.,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8/12/Z3C443Q2V5AG7HY4C2RIVUOFBE/, 검색일자: 2025. 8. 11.

가가치세 측면에서 현행 제도 및 현행 법령상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처리
리를 기술함

-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EU,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NFT 관련 규제 현황 및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대해 기술하고 각 국가의 내용을 비교함
 -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지방정부 단위에서 일반소비세로 운영 중인 판매세 제도를 살펴봄
- 제Ⅵ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기술함

II. NFT의 개관

1. NFT의 의의 및 활용 유형

가. NFT의 개관

-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범위는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록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구매, 판매, 소유, 양도 또는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볼 수 있음
 - 디지털자산은 토큰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토큰화(Tokenization)란 가치 있는 기초자산⁵⁾을 분산원장에 디지털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됨⁶⁾

- 디지털자산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과 대체가능토큰(Fungible Token, FT)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유성’에 있음⁷⁾
 - NFT와 FT 모두 어떠한 권한을 가진 징표이지만, FT는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NFT는 가치에 더하여 개별 NFT별 고유성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음
 - 이에 따라 FT는 동일 토큰 간에 교환될 수 있는 반면, NFT는 상호 대체 불가능함
 - FT의 대표적 예로는 비트코인, 이더 등이 있음

- NFT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분산원장 등에 저장

5) 본 보고서에서는 토큰 발행의 기반이 되는 것을 일컬음

6) House of Commons(2023), pp. 5~6.

7) 유민호 외(2022), pp. 15~21.; 장세형 외(2024), pp. 124~125.

된 고유하고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데이터 단위로 이해됨⁸⁾

- NFT는 명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고유하고 복제·대체·세분화될 수 없는 고유한 데이터 단위임
- 우리나라 법원은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며, 디지털파일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고유값을 부여하여 소유권 및 전송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설명함⁹⁾
- EU는 NFT란 분산원장에 저장된 디지털 단위(일반적으로 ‘토큰’)로서 식별코드(identification code)와 메타데이터(Metadata)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함¹⁰⁾
- 영국 하원은 NFT란 디지털원장에 저장된 데이터단위로 이미지, 예술, 책, 음악, 비디오 등 특정 기초자산에 대한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 역할을 하며 다른 자산으로 복제·세분 또는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함¹¹⁾

□ NFT는 스마트컨트랙트 내에 토큰 ID와 메타데이터로 구성됨¹²⁾¹³⁾

-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블록체인에 프로그래밍된 ‘if-then’ 명령문으로 미리 프로그래밍된 조건이 충족되거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동작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함¹⁴⁾
- 모든 NFT는 스마트컨트랙트에 내장된 고유 토큰 ID로 식별됨
 - 토큰에 식별코드인 토큰 ID를 부여하여 블록체인상에 복제 불가능한 고유하고 식별 가능한 자산이 생성됨

8) Cointelegraph, “The different types of NFTs: A beginner’s guide,” <https://cointelegraph.com/learn/articles/types-of-nft> (accessed May 26, 2025); Wikipedia, “Non-fungible token,” https://en.wikipedia.org/wiki/Non-fungible_token (accessed May 26, 2025)

9)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판결

10) European Commission(2023), p. 2.

11) House of Commons(2023), pp. 5~6.

12) 박경신 외(2022), p. 3.

13) KPMG(2024), p. 5.

14) 1990년대 닉 자보(Nick Szabo)가 제안한 용어로, 닉 자보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자판기(Vending Machine)’로 비유함(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스마트 컨트랙트란 무엇인가?」, <https://m.upbitcare.com/academy/advice/70>, 검색일자: 2025. 7. 8.; Wikipedia, “Smart contract,” https://en.wikipedia.org/wiki/Smart_contract (accessed July 8, 2025))

- 메타데이터는 NFT가 표상하는 것을 나타내며 다음의 내용 등을 담고 있음¹⁵⁾
 - 기초자산의 이름(또는 식별자): 예를 들어 NFT에 의해 라이선스되는 캐릭터나 아바타의 이름
 - 기초자산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캐릭터의 디지털 외양 등
 - NFT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조건: 예를 들어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NFT 소유자가 라이선스되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사항 등
 - 기초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웹주소 등

〈표 II-1〉 FT와 NFT의 구분

구 분	FT	NFT
고유성	×	○
구성요소	스마트컨트랙트 + 잔액(balance)	스마트컨트랙트 + 토큰ID + 메타데이터
전송단위	가치(value)	토큰ID
대표 발행표준	ERC-20	ECR-721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NFT에 대한 대표적 오해는 NFT 그 자체가 이전되는 별도의 재화라던가 또는 기초 자산에 연계된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것이라는 생각임¹⁶⁾
 - NFT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이전되거나 제공되는 재화·서비스가 아니라,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임
 - 엄밀하게 보면 NFT는 디지털자산의 증명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사용과정에서 기술이 아닌 물건처럼 지칭되면서 개념의 혼선이 발생하였다는 견해가 있음¹⁷⁾
 - NFT가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NFT를 소유한다고

15) European Commission(2023), p. 2.

16) KPMG(2024), p. 4.; p. 12.

17) 이시한(2022), pp. 16~17.; p. 87.

해서 기초자산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님¹⁸⁾

- 그 외 NFT는 모두 원본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NFT가 원본임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모든 NFT가 원본이라는 의미는 아님¹⁹⁾
 - NFT의 대체 불가능성을 원본과 동일시하는 오해가 있음
 - NFT는 디지털자산에 고유 토큰 ID를 부여함으로써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NFT가 디지털자산이 원본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NFT는 스마트컨트랙트 내의 해당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에 해당하며 NFT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즉 메타데이터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NFT의 성격이 달라짐²⁰⁾

- NFT 자체는 무의미한 코드에 불과하며 일종의 증서임
 - NFT는 기초자산이 표상하는 것을 나타내는 디지털상의 증서로 볼 수 있음
 - 증서에 토큰 ID를 부여하여 고유성을 부여함
- NFT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NFT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기초자산임
- 발행방식이 대체가능토큰인지, 대체불가능토큰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전자파일에 화체된 기초자산의 내용이 중요함²¹⁾
 - 예를 들어 NFT 형식으로도 증권성이 있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음
- 즉 NFT를 매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NFT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 NFT를 통해 이전되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²²⁾

18) Behrendt(2023), p. 51.; ABA(2023), p. 16.

19) 유민호 외(2022), pp. 20~21.

20) UK House of Commons,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Oral evidence: Non-fungible tokens (NFTs) and the blockchain," HC 598, Q. 3., Q. 7. and Q. 14., <https://committees.parliament.uk/oralevidence/13016/html/> (accessed June 27, 2025); KPMG (2024), p. 5.

21) 김우성(2023), p. 168.

22) KPMG(2024), p. 22.; 이경미 외(2024), p. 80.

나. NFT의 활용 사례

- NFT의 기초자산은 디지털자산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 외 물리적 자산, 실물경제에 대한 인증서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²³⁾
 - NFT의 기초자산은 GIFs, 음악, 수집품, 아트, 트위터, 메타버스 내의 자산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이 일반적이지만, 실물경제에서 제품인증, 실물자산의 소유권, 멤버십 카드를 나타내는 NFT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실물 스포츠카드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NFT를 생성하여 토큰화할 수 있음
 - NFT의 기초자산이 하나의 권리인 경우도 있지만, 다수 권리가 제공되는 복합적인 경우도 있음²⁴⁾
 - NFT를 보유하는 경우 디지털이미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에 부가하여 향후 NFT를 에어드롭 받을 수 있는 권리, 특정 행사에 입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대표적 PFP²⁵⁾ NFT인 Bored Ape Yacht Club은 프로필사진 이외에도 오프라인 파티, 온라인 포럼 입장권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멤버십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NFT가 활용되는 이유로는 ① 디지털자산에 대한 가치 부여 ②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③ 브랜드 충성도 제고 및 ④ 실물자산·서비스의 유동성 증대 또는 이력추적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음²⁶⁾
 - NFT의 대체 불가능성은 디지털자산에 판매 가능한 자산가치를 부여함
 - 원칙적으로 디지털자산은 상대적으로 쉽게 무한 복제가 가능하여 자산가치가 없음

23) European Commission(2023), p. 4.; Behrendt(2023), p. 52.

24) KPMG(2024), p. 7.

25) Profile Picture의 약자로 SNS 프로필 사진에 주로 쓰이는 이미지를 말함

26) Dollenmayer(2023), p. 4.; 이경미 외(2024), p. 36.; 한국저작권위원회(2024b), pp. 22~25.; KPMG and SFA(2024), p. 8.; House of Commons(2023), p. 8.; p. 13.; pp. 14~15.

- NFT는 고유 토큰 ID를 부여하여 개별 디지털자산을 다른 디지털자산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것으로 만들어 가치를 부여함
- 창작자는 NFT를 통해 구매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디지털콘텐츠의 판매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판매 시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신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 기존에는 갤러리 등의 제한된 통로를 통해서만 구매자와 접촉할 수 있었으나 NFT를 통해 구매자 기반이 확대됨
- 기업은 커뮤니티 기반 NFT 발행을 통해 고객의 기업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음²⁷⁾
- NFT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접근성을 향상시켜 실물자산·서비스의 유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NFT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에 거래내역이 기록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소유권 이력 추적을 용이하게 함
 -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 실물자산을 NFT하여 담보 제공 후 대출을 받거나, 실물자산을 NFT화한 후 이를 기반으로 분할NFT(fractionalized NFT, f-NFT)를 발행하여 소액단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

- NFT의 대표적 활용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음²⁸⁾
 - 실물자산·권리 및 서비스: NFT의 고유성 부여 및 추적·식별기능을 활용한 부동산, 미술품, 회원권, 입장권 등에 대한 디지털인증서로서의 활용
 - 크립토틀아트(Crypto Art): 무한정 복제 가능한 디지털아트에 NFT를 이용한 고유성을 부여하여 판매 및 거래
 - NFT는 지식재산권의 동반 여부 또는 사본 수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고유하게 식별되는 예술작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함²⁹⁾

27) 한국저작권위원회(2024a), pp. 14~16.

28) 문명섭 외(2022), p. 24.; 한서희(2022), p. 30.; 이시한(2023), p. 159.

29) Cannas and Spada(2024), p. 61.

- 게임: 게임아이템을 NFT 형태로 발행하여 게임 생태계 밖에서도 게임이용자에게 게임 NFT에 대한 지배·양도권리를 부여함³⁰⁾
 - 기존 게임아이템은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외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게임NFT는 이용자에게 배타적 통제권이 부여되어 게임 밖에서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음
- 수집품: NFT의 추적·식별기능,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거래안정성으로 기존 수집품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 기반을 확장함
 - 스포츠키트, 연예인 굿즈 등 기존 수집품 시장의 인증·사기문제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디지털환경을 통해 국경의 제한 없이 수집품에 대한 구매 기반을 확대함
- 메타버스 내의 경제재: 가상의 디지털공간인 메타버스 내에서 온라인 미술전시회 개최, 메타버스 내의 토지 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

〈표 II-2〉 분야별 대표적 NFT 활용 사례

분야	NFT 활용 사례
실물자산, 권리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키의 크립토킱스(CryptoKicks): NFT기술을 활용하여 스니커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를 개발해 신발 판매 시 실물상품과 함께 토큰을 제공함 · 장범준의 콘서트 티켓: 압표근절을 위해 콘서트 티켓을 NFT로 발행함. 콘서트 이후 공연 영상의 일부를 담은 NFT를 추가로 제공함 · Royal NFT: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NFT의 매매를 지원하는 NFT 음악 플랫폼임. 예를 들어 힙합 아티스트 나스(Nas)는 Royal에서 새로운 싱글앨범을 발매하고 50%의 로열티를 1,100개의 NFT로 판매함. NFT 소유자는 스트리밍 수익을 배분받으며 NFT 등급에 따라 향후 공연 관람, 음원 선공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크립토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플(Beeple)의 '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 디지털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 예명 Beeple)의 5,000일간의 디지털창작품을 하나의 NFT로 합성한 작품이 2021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약 6,934만달러에 매각됨 · 뱅크시(Banksy)의 Original Banksy Morons: 2006년 제작된 실물 미술품인 Morons(멍청이들)을 NFT화한 후 실물작품은 소각함. 해당 NFT 작품은 2021년 3월 228ETH에 매각됨

30) 길용원(2024), pp. 175~176.

〈표 II-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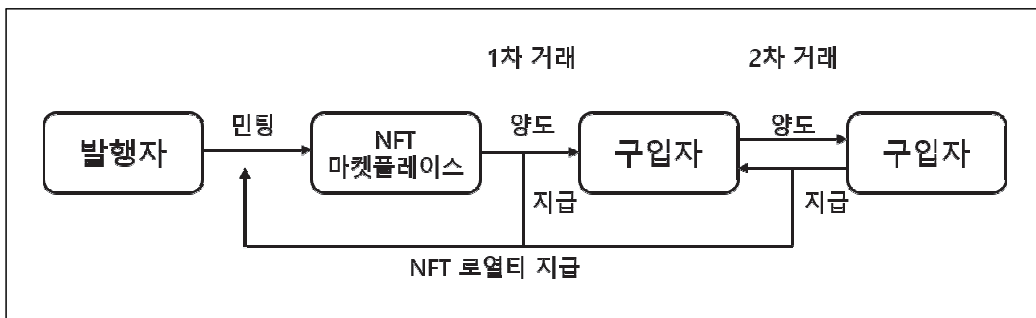
분야	NFT 활용 사례
크립토아트	· 매일경제신문사의 대한민국 NFT 디지털아트대전: 디지털아트 형식으로 제작된 창작품 중 선정하여 수상작은 NFT로 발행하여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 기회를 제공함
게임	· 대퍼랩스(Dapper Labs)의 크립토키터: 2017년 제작된 게임으로 NFT 형태로 가상고양이인 크립토키터의 구매·판매·번식이 가능한 게임임. 각 크립토키터는 NFT 형태로 추적 가능하며 희귀 크립토키터는 경매할 수 있음 · 스카이 마비스의 액시인피니티(Axie Infinity): 베트남 기업인 스카이 마비스의 액시인피니티 게임은 게임을 통해 얻은 토큰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P2E 게임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서 실질적 생계수단으로 각광을 받음 · 메이플스토리N: 2025년에 선보인 게임으로 이용자는 게임 내 아이템 및 캐릭터를 NFT로 소유 및 거래할 수 있음
수집품	· 대퍼랩스의 NBA 톱샷: NBA 경기 플레이 등을 영상으로 담아 NFT 트레이딩 카드로 제작함 · 국제축구연맹(FIFA)의 FIFA Collect: FIFA는 2022년 축구경기 명장면, 선수 카드, 토너먼트 기념 아이템 등을 NFT화하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함. VIP 멤버십 카드와 같은 한정판은 FIFA 경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함 · 유가랩스(Yuga Labs)의 Bored Ape Yacht Club: 대표적인 PFP(Profile Picture) NFT로 소유자는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원숭이 캐릭터를 가지게 되며, 자신의 원숭이 캐릭터를 상업화할 수 있음. 이에 더해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포럼, 오프라인 파티, VIP 경매 등에 초대될 수 있음 · 퍼지펭귄(Pudgy Penguins): PFP NFT 유형으로 NFT 소유자는 자신의 퍼지펭귄 캐릭터를 활용하여 개인 사업화가 가능함. 또한 퍼지펭귄 캐릭터를 활용한 실물 장난감을 판매하고 장난감 구매자에게 QR코드를 통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 가능한 NFT를 지급함
메타버스	· 디센트럴랜드의 NFT 부동산: 대표적인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가상세계에서 NFT 형태의 부동산 등을 거래함 · 더 샌드박스의 LAND: 플레이어는 게임 내에서 가상 땅(LAND)을 소유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하여 거래하며 직접 게임을 만들 수 있음. 플레이어는 구매한 LAND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매매 및 임대할 수 있음

자료: 문명섭(2022), pp. 24~70.; 삼성SDS, 「NFT, 수집품 외 용도가 있을까?」,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nft_collections.html, 검색일자: 2025. 7. 28.; 현대카드 DIVE, 「그날의 기억, NFT로 간직할래」, <https://dive.hyundaicard.com/web/content/contentView.hdc?contentId=16886&cookieDiveWeb=Y>, 검색일자: 2025. 7. 28.; 『매일경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베스트셀러가 된 퍼지펭귄[엠블록레터]」, <https://www.mk.co.kr/news/it/10897587>, 검색일자: 2025. 7. 30.; FIFA COLLECT, <https://collect.fifa.com/faqs> (accessed August 5, 2025)

2. NFT의 거래구조

- NFT의 거래를 위해서는 NFT가 민팅(minting)되는 단계가 필수적이며, 이후 P2P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II-1] NFT 거래흐름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가. NFT의 민팅

- NFT가 디지털원장에 업로딩되는 과정을 민팅(minting)이라 함
 - 금속 코인이 생성되어 유통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디지털항목을 블록체인상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민팅이라고 표현함
 - 민팅을 위해서는 거래 검증 및 정보를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더와 같은 암호자산으로 수수료(일명 '가스비(gas fee)')를 지불함
 - 민팅된 NFT는 사용자의 지갑(wallet)에 저장됨
 - 지갑은 디지털자산을 보관·전송·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저장소로 기존 금융거래의 계좌번호와 유사한 개념임³¹⁾

31)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디지털 자산 지갑은 무엇인가?」, <https://m.upbitcare.com/academy/advice/58>, 검색일자: 2025. 7. 8.

- NFT는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ERC-721에 의하여 발행됨³²⁾
 - 각 분산원장기술 네트워크는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자체 프로토콜이 있지만 이더리움 기반 ERC-721이 가장 대표적임
 - ERC-721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NFT의 생성 및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 프로토콜로서, 토큰 소유권의 이전, 토큰 소유권 내역 추적 등을 가능하게 함³³⁾
 - 그 외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SPL, 비트코인 기반의 Ordinals 등이 있음
 - 최근에는 ERC-1155 등 대체가능토큰(FT)처럼 교환 가능하면서도 NFT와 같이 고유한 속성을 가진 하이브리드 토큰 발행 프로토콜도 도입되고 있음³⁴⁾³⁵⁾

- NFT의 기초자산은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체인 내부(internal storage) 또는 외부(external storage)에 저장될 수 있음³⁶⁾
 - 체인 내부 저장방식: 기초자산인 디지털파일이 블록체인에 기록 및 저장되는 방식으로 디지털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함
 - 체인 외부 저장방식: 블록체인에 기초자산인 디지털파일이 저장된 오프체인 위치 정보만이 기록됨
 - 메타데이터는 실제 디지털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만을 가리키며 디지털파일은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³⁷⁾ 또는 클라우드 서버 등에 보관됨

32) GORDAN LAW, “Complete Guide to NFT Taxes,” <https://gordonlaw.com/learn/nft-tax-guide/> (accessed June 25, 2025)

33) ETHEREUM, “ERC-721 Non-Fungible Token Standard,” <https://ethereum.org/en/developers/docs/standards/tokens/erc-721/> (accessed June 24, 2025); Behrendt(2023), p. 51.

34) ETHEREUM, “ERC-1155 Multi-Token Standard,” <https://ethereum.org/ko/developers/docs/standards/tokens/erc-1155/> (accessed July 8, 2025); NonFungible, “Metadata or Token Attributes,” <https://nonfungible.com/academy/analytics/metadata-token-attributes> (accessed July 8, 2025)

35) ERC-1155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같은 속성을 가진 게임아이템을 100개 발행할 수 있음(유민호 외(2022), p. 84.)

36) Behrendt(2023), p. 51.; Morton and Curran(2024), p. 14.; NYSBA(2023), p. 2.; Dimita et al.(2024), pp. 30~34.

37) 분산원장기술 네트워크의 여러 노드에 파일을 분산할 수 있는 분산형 파일 저장 시스템을 말함

- 용량의 제한 및 거래수수료(가스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체인 외부 저장방식이 사용됨
 - 다만 체인 외부 저장방식은 기초자산에 대한 링크가 끊어지는 경우 NFT가 기초자산에 접근할 수 없고 관련 값이 감소되거나 손실되는 위험이 있음

나. NFT의 양도

- NFT는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하나의 단위로 양도 및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 NF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체가능토큰(일명 'f-NFT')도 발행될 수 있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의 NFT에 해당되지 않음
 - 분할이 불가능한 NFT 원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체가능토큰을 발행하여 NFT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조각투자할 수 있음
- NFT는 발행자 등과 구매자 간의 P2P 거래도 가능하지만,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³⁸⁾
 -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발행자가 제작한 NFT를 판매하거나(1차 거래), 구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NFT를 가상자산을 통해 매매(2차 거래)할 수 있음
 - NFT 거래소를 통해 NFT의 제작·발행, 제작 또는 구매한 NFT의 판매, NFT의 구매 등의 행위가 가능함
 -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로는 오픈씨(OpenSea), 래러블(Rarible) 등이 있음
 - 국내 NFT 마켓플레이스에는 업비트, 코빗 등이 있음
- NFT는 디지털자산 또는 법정화폐로 구매할 수 있으나 디지털자산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임³⁹⁾

38) 길용원(2024), p. 174.; 한서희(2022), p. 31.

39) 『조선일보』, 「“우린 코인과 달라” 가상화폐와 거리 두는 NFT」, 2023. 2. 24.,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1/12/YUJ6XQG4KZF7XK3RRAIJQGZJRI/>, 검색일자: 2025. 7. 28.

- 대표적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에서는 디지털자산으로만 NFT를 구매할 수 있는 반면, TopPort, 코빗과 같은 일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법정화폐로도 구매할 수 있음⁴⁰⁾
- 저작물에 대한 NFT 취득을 통해 자동적으로 저작권⁴¹⁾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NFT 구매 시 저작권 전체가 이전되지는 않음⁴²⁾
 - NFT의 매수자는 NFT를 통해 인증서의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이며, 계약에 따라 인증서는 관련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도 있으나 단순 사용권만을 부여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저작품 관련 NFT를 통해서 저작품에 대한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권리의 일부가 제공됨⁴³⁾
- 저작권과 관련된 일부 NFT의 경우 저작자가 1차 판매 이후 후속거래 시 일정 비율의 금전을 수취하는 경우(이하 ‘NFT 로열티’)가 있으며 이는 일종의 추급권으로 볼 수 있음
 - 추급권(Droit de suite)이란 미술저작품의 원본이 최초 양도된 이후 계속하여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자가 해당 작품의 매도인에게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재판매 보상청구권임⁴⁴⁾

40) TopPort, <https://www.topport.io/faq>, 검색일자: 2025. 7. 28.; KORBIT, 「NFT PASS 구매 과정」, https://cdn.korbit.co.kr/nft/umf/Festival_NFT_Guide.pdf, 검색일자: 2025. 7. 28.; Opensea, “How to buy an NFT,” <https://opensea.io/learn/nft/how-to-buy-nft> (accessed July 28, 2025)

41)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분되며 별도 절차나 형식 없이 창작시에 창작자에게 귀속됨(「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42) UK House of Commons,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Oral evidence: Non-fungible tokens (NFTs) and the blockchain,” HC 598, Q.7. and Q.9., <https://committees.parliament.uk/oralevidence/13016/html/> (accessed June 25, 2025); Gheorghiu(2023), pp. 88~89.

43) KPMG(2024), p. 15.; 김현경(2021), p. 426.

44) 유의정(2019), p. 2.

- 추급권은 1920년 프랑스에서 제정되었으며 EU 회원국은 2001년 관련 지침 제정 이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추급권을 보장하고 있음⁴⁵⁾
- 우리나라는 현재 추급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나 2027년 7월 26일 이후부터 인정할 예정임
 - 우리나라는 2023년 7월 25일 「미술진흥법」을 개정하여 2027년 7월 26일 이후부터 추급권 관련 조항을 시행할 예정임
- 추급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있음⁴⁶⁾

45) 한지영(2025), p. 414.

46) 유의정(2019), p. 2.; 김소연(2022), pp. 15~17.

Ⅲ. 우리나라의 NFT 과세제도

1. 개요

가. NFT의 법적 성격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 우리나라는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관련 국내 첫 법률임
 - 가상자산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⁴⁷⁾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해당 정의규정을 차용하고 있음
 -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년 3월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신설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정의 규정을 차용함

47) 이경미 외(2024), p. 5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를 말함⁴⁸⁾
 - 다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아이템 및 캐릭터와 같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이미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가상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됨⁴⁹⁾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NFT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⁵⁰⁾
 - (가상자산 해당 의견) NFT는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요건(전자적 증표, 경제적 가치, 거래 가능)을 충족하므로 가상자산에 해당함
 - (가상자산 반대 의견) NFT는 콘텐츠 또는 자산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증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금융위원회 등은 2024년 6월에 NFT의 법적 성격 분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함⁵¹⁾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⁵²⁾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에서 제외됨
 -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임

4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9) 이경미 외(2024), p. 49.

50) 관계부처 합동(2022), p. 24.

5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2조

5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NFT에 대해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단일하게 존재하여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가 NFT의 명칭에 부합하는 통용된 용어임을 감안하면 이는 NFT에 대한 정의라 할 수 있음(금융위원회(2024. 6. 11.), p. 2.)

- NFT의 특성상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산업육성 차원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NFT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⁵³⁾
 - NFT는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며 2차 거래에 한계가 있어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음

2) NFT의 법적 성격 분류를 위한 금융위원회 등의 가이드라인(2024. 6.)⁵⁴⁾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융위원회 등”)은 NFT 발행 형태에 따라 NFT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NFT의 법적 성격을 일원화하여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성격, 발행 및 유통구조, 용도, 약관·광고, 사업 및 서비스 내용 등을 바탕으로 명칭 또는 기술이 아닌 NFT의 실질기능과 용도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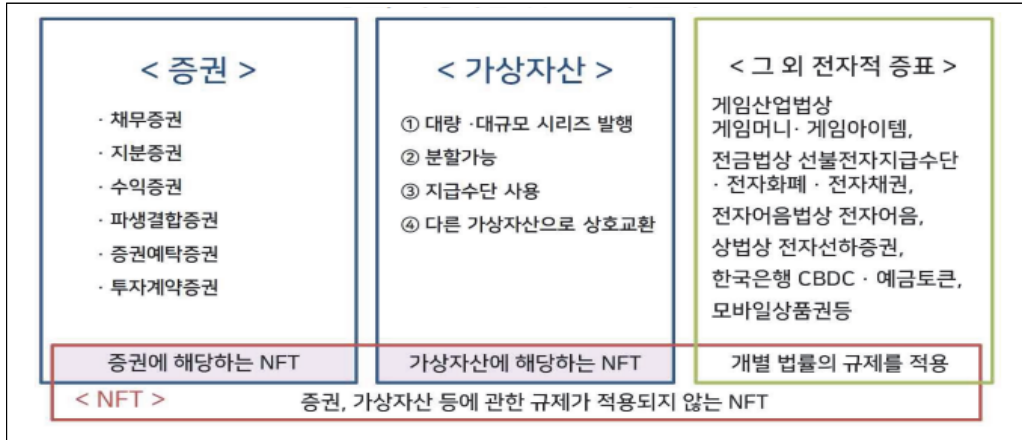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 등은 NFT는 실질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발표함
 - 따라서 NFT는 증권, 가상자산, 개별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는 NFT, 그 외 NFT로 분류할 수 있음

- NFT의 증권 해당 여부는 수익배분 구조, 명시적·묵시적 계약 및 스마트컨트랙트의 내용, 투자 광고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
 - 증권성 판단에서는 발행형태가 실물이든 디지털이든 중요하지 않으며, 디지털일 경우에도 중앙집중식 전자증권인지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증권인지는 고려하지 않음
 - 형식적·기술적 요소와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해야 함

53) 금융위원회(2024. 6. 11.), p. 1.

54) 금융위원회(2024. 6. 11.); 금융위원회(2023. 2. 6.)

[그림 III-1] NFT의 분류



자료: 금융위원회(2024. 6. 11.), p. 6.

- NFT에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해당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 등은 개별 NFT가 다음 특성 중 어느 하나를 지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예)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된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분할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예) 하나의 NFT가 분할 가능한 경우, 하나의 NFT를 분할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예)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NFT가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에 상호교환이 가능한 경우,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예) 신원 또는 자격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예)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예)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나. 그 외 법적 고려사항

1) NFT의 사법(私法)적 성격

- NFT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사법상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단계에 있으며, 이중 「민법」상 물건 해당 여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음⁵⁵⁾
 - 디지털자산의 사법적 성격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며, 주로 다자간 계약·채권관계로 보는 견해와 일종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는 견해로 나뉨
- 우리나라 「민법」은 물건에 한해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NFT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민법」상의 물건이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함⁵⁶⁾
 - 대표적 물권인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⁵⁷⁾이며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함

55) 이경미 외(2024), p. 5.

56) 「민법」 제98조.

57) 「민법」 제211조.

- 현행 「민법」상 NFT와 같은 디지털자산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임⁵⁸⁾
 - 디지털자산은 배타적 관리 가능성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물건과 유사하지만 현행 법 문언의 확장 해석은 어려우므로 물건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설임
 - 물건성을 부인하는 학설에서는 광업권과 같은 준물권으로 보자는 견해, 판례상 인정되는 무형자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에 준해 재산권적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견해,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채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등이 있음

- 판례는 디지털자산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인 것으로 보고 있음⁵⁹⁾
 - 민사법원은 비트코인은 「민법」상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것으로 보고 있음⁶⁰⁾
 -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함⁶¹⁾
 - 즉 디지털자산은 「민법」상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경제적·사실적 재산으로서 계약에 의해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⁶²⁾

2) 게임 NFT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 기존 게임아이템은 게임 내에서만 가치가 있으나, 게임 NFT는 게임 밖의 개인지갑으로 전송될 수 있고 외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등으로 전환될 수 있음

58) 이경미 외(2024), p. 9.

59) 이경미 외(2024), pp. 106~107.

60)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단5068564;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6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62) 이경미 외(2024), p. 61.

- 게임 NFT의 경우 게임 서비스의 제공 여부 또는 이용자가 해당 게임계정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됨
- 게임 NFT 보유자는 외부 거래소를 통해 게임 NFT를 이전할 수 있으며, 게임계정이 없는 자도 게임 NFT를 구매하여 보유할 수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행성 게임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게임 NFT를 제공하는 경우 금지대상인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게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유·무형의 산출물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간접적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행성 문제가 제기됨⁶³⁾

- 현재 우리나라는 게임 NFT의 제공은 사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게임 NFT를 제공하는 게임물의 배급을 금지하고 있음
- 법원은 국내 첫 P2E⁶⁴⁾ 게임물에 대한 게임등급분류거부 취소에 대한 소에서 게임NFT는 경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P2E 게임물의 등급분류거부 취소 청구를 기각함⁶⁵⁾
- 한편 우리나라는 게임 NFT를 제공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금지하지만 미국, 일본 등은 허용하고 있음⁶⁶⁾

2. 소득세 과세제도

- NFT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 별도의 규정이나 과세지침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임

6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64) P2E는 Play to Earn의 약자로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물의 유형을 말함.

65)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판결

66) 길용원(2024), p. 172.

- 금융위원회 등은 NFT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법적 성격을 정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과세당국은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된 유권해석에서 NFT의 과세 여부는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밝힘
 - NFT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역시 NFT라는 형식적 외형이 아닌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실질 내용과 성격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보임
- 이하에서는 NFT를 ① 증권 ② 가상자산 ③ 개별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는 NFT ④ 그 외 NFT로 분류하고, 별도 과세규정이 없는 유형 ③·④의 NFT는 기초자산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경우 각각에 적용되는 과세처리를 살펴봄
- ‘③ 개별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는 NFT’ 중에서는 게임 NFT에 대해 살펴봄
 - ‘④ 그 외 NFT’에서는 NFT가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언급되는 기초자산이 실물미술품, 디지털아트, 수집품, 특정시설물이용권인 사례를 살펴봄

가. 증권에 해당하는 NFT

-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권의 종류와 보유·처분 단계에 따라 양도소득,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됨
- 예를 들어 NFT가 지분증권(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시 양도소득, 배당이 있을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블록체인 및 NFT를 기반으로 새로이 등장한 조각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함⁶⁷⁾
 - 2025년 7월부터 적격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또는 적격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투자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한편 주식 등의 매매 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67)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 내지 제11항

분류될 수 있음⁶⁸⁾

- 다만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은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를 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⁶⁹⁾

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임⁷⁰⁾
 -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차용함
 -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⁷¹⁾
- 한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행위가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²⁾
 - 이는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⁷³⁾

다. 개별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는 NFT 중 게임 NFT

- 현재 게임 NFT를 제공하는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어 금지되고 있으나, 만일 게임 NFT가 합법화되어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가상자

68) 김문정 외(2024), p. 5.

69) 이창희(2024), p. 470.

7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71) 홍병진 외(2024a), pp. 15~16.

72) 홍병진 외(2024a), p. 21.

73) 김갑래(2022), p. 12.

산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불확실함

- 게임 NFT가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면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⁷⁴⁾ 이 경우 게임 NFT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게임 NFT를 제공하는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게임아이템이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 게임아이템은 「(구)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⁷⁵⁾
- 반면 게임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임

라. 그 외 NFT

1) 기초자산이 실물 미술품인 NFT

- NFT의 기초자산이 실물 미술품인 경우 거래 단계별로 과세처리를 살펴봄
 - 1차 거래는 창작자가 본인이 창작한 미술품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말함
 - 2차 거래는 창작자 외의 자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거래를 말함
- 1차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창작자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창작 활동을 통해 산출한 실물 미술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⁷⁶⁾
 - 이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⁷⁷⁾
 - 반면 사업성이 없는 경우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⁷⁸⁾

74) 한서희(2022), p. 40.

75) 「(구)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76) 미술품 창작을 업으로 하는 작가는 작품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예술창작업에서 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권민(2024), p. 105.)

77)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7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작자가 수취하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2차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됨
 - 사업장 등 물적시설⁷⁹⁾을 갖추고 거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⁸⁰⁾
 - 사업성이 없는 경우로서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술품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미술품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함⁸¹⁾⁸²⁾
 - 서화 또는 골동품 중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콜라주와 유사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⁸³⁾·인쇄화 및 석판화를 대상으로 함
 - 생존하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하지 않음
- 2차 거래 시 계약에 따라 원작자에게 귀속되는 NFT 로열티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음⁸⁴⁾
 - 우리나라는 현재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된 과세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규정은 없음
 - 원작자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임
 - 「소득세법」은 원작자가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79)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

80)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

81)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82) 즉 열거되지 않은 미술품(조각품 등)이나 생존 국내작가의 작품은 양도가액과 무관하게 과세하지 않으며, 열거된 미술품 중에서도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하지 않음

83) 손으로 만든 고유한 번호를 부여받은 작품으로 해석됨(권민(2024), p. 366.)

8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활동의 일환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됨⁸⁵⁾

- 과세당국은 2023년 크립토아트 NFT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크립토아트의 NFT 로열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⁸⁶⁾

2) 기초자산이 디지털아트인 NFT: 크립토아트 NFT

- 크립토아트 NFT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이전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거래 단계별(1차, 2차)로 과세처리를 살펴봄
 - 1차 거래는 창작자가 디지털아트를 민팅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래임
 - 2차 거래는 창작자 외의 자가 크립토아트 NFT를 재차 양도하는 거래임

- 1차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비과세될 것으로 보임
 - 창작자가 사업적으로 크립토아트 NFT를 제작·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이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⁸⁷⁾
 - 반면 창작자의 크립토아트 NFT 제작·판매가 사업 활동의 일환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소득은 디지털아트의 성격에 따라 달리 과세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아트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작자가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함⁸⁸⁾
 - 반면 디지털아트가 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소득은 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음

8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김영순(2024), p. 158.

86) 서면-2022-법규소득-2671, 2023. 1. 2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23. 1. 20.

87)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권민(2024), p. 105.

8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2차 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크립토티 NFT를 사업적으로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이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
 - 반면 사업성이 없는 경우, 크립토티 NFT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음
 - 「소득세법」은 원작자가 아닌 자의 서화 등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은 서화에 대해 별도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서화란 유형성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디지털아트는 「소득세법」의 서화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임⁸⁹⁾

- 2차 거래 시 NFT의 최초 제작·발행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NFT 로열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과세당국은 2023년 1월 디지털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NFT 재판매 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인 것으로 회신함⁹⁰⁾

〈사실관계〉

- 창작자는 플랫폼을 통해 한정된 수량의 디지털콘텐츠 NFT를 민팅함
 - NFT소유자는 디지털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NFT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NFT가 연계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의미하지 않음
- NFT플랫폼은 NFT 양도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NFT 양도자와 양수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이 중 일부를 거래 발생 시마다 NFT의 발행인인 창작자에게 지급함

89) 김영순(2024), p. 144.

90) 서면-2022-법규소득-2671, 2023. 1. 2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23. 1. 20.

〈과세당국의 회신〉

- 2차 거래 시 플랫폼이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 과세당국은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표 III-1〉 실물 미술품 NFT와 크립토티 NFT의 과세 범위 비교

기초자산	1차 거래 (창작자→제3자)		2차 거래 (제3자 간)	
	사업성 有	사업성 無	사업성 有	사업성 無
실물 미술품	사업소득	기타소득 ¹⁾	사업소득	기타소득 ²⁾
디지털아트	사업소득	창작품 與	기타소득 ¹⁾	사업소득
		창작품 不	과세 × ³⁾	

주: 1) 일시적이나 우연한 창작활동으로 산출된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2) 다음의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i) 미술품 중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ii)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 iii) 국외 원작자 작품이거나 생존하지 않은 국내 원작자의 작품(「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반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미술품은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음

3) 크립토티 NFT를 창작품으로 보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나(「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창작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음

4) 제3자 간 크립토티 NFT가 매매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음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3) 기초자산이 수집품인 NFT

□ 수집품은 학문적 가치나 개인적 흥미 등을 이유로 소장하는 것으로서 NF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초자산을 수집품으로 하는 NFT가 증가하고 있음

○ 우표, 스포츠킴 등은 대표적인 수집대상이었으며, 최근에는 NFT 수집품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였음

- NFT 기술의 도입에 따라 신뢰도 증가로 인한 거래 증가, 거래접근성 개선,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이 가능해져 거래가 빈번해질 수 있음⁹¹⁾

- 개인이 수집품 NFT를 사업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 「소득세법」은 수집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음

4) 기초자산이 특정시설물 이용권인 NFT

- 기초자산이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인 경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함⁹²⁾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이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시설물(예: 골프장, 콘도미니엄, 체육시설)을 의미함
-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3.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부가가치세법」은 NFT 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NFT의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과세처리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6월 과세당국은 NFT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91) 이시한(2023), p. 70.

9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해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밝힘⁹³⁾

- 한편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해석되고 있음⁹⁴⁾
- 이하에서는 대표적 NFT 유형인 NFT의 기초자산이 실물 미술품 또는 디지털아트인 경우의 과세처리를 거래 단계별로 살펴봄
 - 1차 거래는 창작자가 창작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래임
 - 2차 거래는 창작자 외의 자가 재차 양도하는 거래임

가. 기초자산이 실물 미술품인 NFT

- 1차 거래에서 실물 미술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함⁹⁵⁾
 - 「부가가치세법」은 면제대상 창작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함⁹⁶⁾
- 2차 거래는 1차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물 미술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소득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보다는 거래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공급자가 창작자인 경우(1차 거래)와 창작자 외의자인 경우(2차 거래)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음

9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 6. 14.; 기준-2022-법규부가-0070, 2024. 6. 24.

94) 부가, 서삼46015-10926, 2002. 5. 3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9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다만 100년이 넘은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은 과세함

96) 심사-부가-2016-004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1

나. 기초자산이 디지털아트인 NFT: 크립토아트 NFT

- 크립토아트 NFT의 경우 기초자산인 디지털아트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함
 -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⁹⁷⁾
 - 예술의 종류를 조형예술(미술, 사진, 건축 등), 표정예술(무용, 연극 등), 음향예술(음악 등), 언어예술(시, 소설, 희곡, 평론 등), 산업예술 등으로 구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예술창작품은 조형예술의 미술과 사진, 음향예술의 음악 분야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에 한해 면세되는 것으로 판시함⁹⁸⁾⁹⁹⁾
 - 전통적으로 손으로 창작된 회화나 조각 등과 달리, 디지털아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된 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정의하는 면세 대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함

- 만약 디지털아트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에 해당된다면, 앞서 살펴본 실물 미술품의 사례처럼 공급자의 창작자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이나 그 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97) 광주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395 판결

98) 해당 판결 사건에서 쟁점이 된 ‘창작뮤지컬’은 기존에 면세하는 미술, 음악, 또는 사진 분야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해당 판결 이후 2016년 세법 개정을 통해 연극과 무용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이 면세 예술창작품에 추가됨

99) 한편 언어예술에 해당하는 시, 소설 등은 예술창작품과 별도로 도서에 대한 면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또한 예술행사 또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 제3호)

〈표 Ⅲ-2〉 「부가가치세법」상 실물 미술품 NFT와 크립토티 NFT의 과세 여부

기초자산		1차 거래 (원작자→제3자)	2차 거래 (제3자 간)
실물 미술품 ¹⁾		면세	면세
디지털아트 ²⁾	예술창작품 與	면세	면세
	예술창작품 不	과세	과세

주: 1) 실물 미술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다만 골동품은 제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디지털아트의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4. 조세행정

- 가상자산사업자는 2027년부터 과세관청에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제출 의무가 있으나,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
 - 가상자산사업자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¹⁰⁰⁾
 - 분기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¹⁰¹⁾와 연도별 가상자산거래집계표¹⁰²⁾를 제출해야 함
 - 국세청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기한¹⁰³⁾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¹⁰⁴⁾
 - 거래내역 제출대상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

100) 「소득세법」 제164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101)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자의 인적사항, 가상자산 종류별 거래 전·후 잔고 내역, 거래일자 및 거래 유형 등

102)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자의 인적사항, 가상자산 종류별 거래내용(양도 및 취득 가액, 수수료, 기타 소득금액, 연간 변동 내역) 등

103) 거래발생일이 속한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

10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의4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별지 제30호의3 서식), 가상자산거래집계표(별지 제30호의4 서식)

자산을 말하므로, NFT 중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는 OECD CARF의 이행을 위해 2024년 세법 개정 시 금융회사 등에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상 자산에는 NFT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¹⁰⁵⁾
-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사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교환하는 정보분부터 적용함
 - CARF 참여국 간 정보 수령 및 제공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NFT를 포함한 암호화자산 관련 거래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교환대상인 암호화자산은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해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 특정전자화폐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산
 -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 현재 암호화자산 중 교환제외대상으로 고시된 자산은 없음

105) 기획재정부(2024), p. 9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38조

IV. 주요국의 NFT 과세제도

1. EU 지침

가. NFT 규제

- EU는 기존 규제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암호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암호자산 시장 규제(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이하 'MiCA')를 도입하여 2024년 12월부터 시행함¹⁰⁶⁾
 - 기존 금융시장규제가 미적용되는 암호자산에 대해 EU 차원의 통일된 규제를 마련하여 EU 암호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금융 안전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됨
 -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의무, 시장조작 및 내부자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EU는 토큰증권은 제2금융상품시장지침(2n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 II)과 같은 금융상품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반면, 비증권성 암호자산은 MiCA에 의해 규제함¹⁰⁷⁾
 - 암호자산이 금융상품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MiCA가 아닌 MiFID II가 적용됨¹⁰⁸⁾

106) ESM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https://www.esma.europa.eu/esmas-activities/digital-finance-and-innovation/markets-crypto-assets-regulation-mica> (accessed June 23, 2025);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이하 "MiCA")

107) 홍병진 외(2024a), p. 42.

108) ESMA(2024), p. 17.

- MiCA는 암호자산을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또는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¹⁰⁹⁾
 - 전자화폐토큰: 법정통화의 가치를 참조하여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암호자산 유형을 말함¹¹⁰⁾
 -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이외의 암호자산 중 하나 이상의 법정통화를 포함하여 다른 가치나 권리 또는 이들의 조합을 참조하여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암호자산을 말함¹¹¹⁾
 - 그 외의 암호자산: 유틸리티 토큰 등 암호자산 중 전자화폐토큰 또는 자산준거토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 EU는 NFT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MiCA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현재 EU 차원에서 NFT를 규율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임¹¹²⁾¹¹³⁾
 - NFT가 비록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기적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NFT의 특성상 금융적 사용도가 낮아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이 제한적이므로 규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NFT는 각 토큰의 고유성과 개인적 효용성에서 가치가 발생하여 상호교환성이 낮고 시장비교가 어려움
 - NFT의 기초자산으로 디지털아트, 수집품, 실물보증서 및 부동산 등을 언급함
 - 다만 외형이 NFT와 같더라도 실질적 기능이나 사용 형태가 대체 가능하거나 고

109) MiCA, 제3조 제1항 제5호

110) MiCA, 제3조 제1항 제7호

111) MiCA, 제3조 제1항 제6호

112) MiCA, Recital 10-11.

113) Deloitte, “ESMA clarifies which crypto-assets might qualify as financial instruments in the EU,” <https://www.deloitte.com/lu/en/Industries/investment-management/perspectives/ESMA-clarifies-which-crypto-assets-might-qualify-as-financial-instruments-in-the-EU.html> (accessed June 23, 2025)

유하지 않다면 MiCA의 적용대상임

- 예를 들어 f-NFT 또는 대량 발행된 NFT 컬렉션은 고유하지 않거나 대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MiCA가 적용될 수도 있음¹¹⁴⁾

○ NFT에 대해서 MiC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토큰증권으로 분류되는 NFT에는 MiFID II 및 기타 관련 EU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¹¹⁵⁾

나. 부가가치세

1) 비트코인 등의 교환토큰¹¹⁶⁾

□ 유럽사법재판소(이하 'ECJ')는 2015년 Hedqvist 판결을 통해 비트코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 및 과세 여부에 대해 판시함¹¹⁷⁾

○ ECJ는 2015년 10월에 비트코인과 법정통화 간 교환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유럽 내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리에 대한 선도판례(Leading Case)로 분류됨

□ ECJ는 비트코인은 부가가치세 목적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¹¹⁸⁾

114) MiCA 목적상 배제대상인 NFT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요소는 '기초자산의 고유성'이므로 대규모 시리즈나 컬렉션으로 발행되어 시리즈상의 다른 NFT와 상호연결성이 높아 해당 NFT 별도의 고유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MiCA가 배제되는 NFT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ESMA (2024), p. 47.)

115) SIMONTBRAUN, "NFTs (Non-Fungible Tokens) and Financial Services," <https://simontbraun.eu/nfts-non-fungible-tokens-and-financial-services/2023/05/25/> (accessed June 23, 2025).; ESMSA(2024), p. 47.)

116) 디지털자산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교환토큰,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분되며 교환토큰은 주로 가치의 저장 및 교환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비트코인, 이더 등이 이에 해당함

117) ECJ Case C-264/14,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

118) ECJ Case C-264/14, Paragraph 22-26

- EU 부가가치세 준칙은 「부가가치세법」 목적상 유형자산만이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¹¹⁹⁾
 -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모든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됨¹²⁰⁾
-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 비트코인과 법정통화의 교환거래는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임

- ECJ는 비트코인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과 법정통화의 교환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함¹²¹⁾
 - ECJ는 비트코인은 지불수단으로서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고 특정 거래 당사자에 의해 법정통화의 대체수단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
 - 또한 비트코인은 재산을 부여하는 증권이 아니며 이와 비슷한 성격의 증권에도 해당되지 않음
 - ECJ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지급수단 이외의 목적이 없어 부가가치세 목적상 ‘통화’로 볼 수 있다면, 비트코인과 법정통화의 교환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EU 부가가치세준칙은 통화 관련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거래로 규정함¹²²⁾
 - 재정중립성 원칙에 입각하여 면제대상 거래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통화란 법정 통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순수하게 지급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119) EU VAT Directive Article 14

120) EU VAT Directive Article 24

121) ECJ Case C-264/14, Paragraph 32-57

122) EU VAT Directive Article 135(1)(e).: “transactions, including negotiation, concerning currency, bank notes and coins used as legal tender, with the exception of collectors' items, that is to say, gold, silver or other metal coins or bank notes which are not normally used as legal tender or coins of numismatic interest”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NFT

- NFT는 비트코인 등과는 달리 지급수단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NFT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과 비트코인의 처리방법이 동일할 수 없음
 - Hedqvist 판결은 비트코인이 법정통화와 같이 지불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함
 - 반면 일반적으로 NFT는 법정통화와 같은 지불수단으로 통용되지 않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¹²³⁾는 2023년과 2024년에 NFT의 부가가치세 취급에 대한 4개의 워킹페이퍼(working paper)를 발표하였으며 이하에서는 해당 내용을 살펴봄
 - EC의 워킹페이퍼는 구속력이 없지만 EU 차원의 부가가치세 취급에 대한 공식적 논의 문서이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 봄
 - EC 부가가치세 위원회(EC VAT Committee)는 권고기관에 해당하며 위원회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지침의 해석에 있어 일관성 확보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¹²⁴⁾

가) EC Working Paper No. 1060. “Initial VAT reflections on non-fungible tokens,” 2023. 3. 21.

(1) 부가가치세 목적상 법적 성격

- NFT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보고서에서는 NFT를 기초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고유한 암호자산으로 정의함

123) EC VAT Committee는 권고기관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지침의 해석에 있어 일관성 확보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124) European Commission, “VAT Committee,”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vat/vat-expert-group-veg/vat-committee_en (accessed June 12, 2025)

- 고유하다는 것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비트코인과 같이 상호 교환 가능하고 구별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 EC는 NFT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을 재산권 증서, 바우처, 복합공급, 전자적 용역의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함
 - (재산권 증서) NFT를 통해 기초자산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는 등기증서를 발급받게 됨. 해당 거래에서 등기 서류는 단순히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소유권의 확인 수단에 불과하며 거래대상은 부동산임
 - NFT가 단순한 증명 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함
 - (바우처) NFT가 특정 재화나 용역으로의 교환 가능한 권리를 부여하고 교환 시 소각되는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는 단일목적바우처(Single Purpose Voucher) 또는 다목적바우처(Multi Purpose Voucher)로 간주될 수 있음
 - 소위 기프트카드 NFT도 부가가치세 목적상 바우처로 간주될 수 있음
 - (복합공급) NFT를 통해 디지털토큰과 관련 자산을 복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된 공급요소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해야 할 수 있음
 - (1안) 관련 자산의 공급이 주된 공급요소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해야 함
 - (2안) 디지털토큰이 거래의 주된 요소로 분류되는 경우¹²⁵⁾ 디지털토큰은 부가가치세 목적상 ‘전자적 용역’에 부합하므로 전자적 용역거래로 분류해야 함
 - (3안) NFT의 공급과 관련된 자산의 공급이 단일하고 분리 불가능한 경제적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해야 함
 - (전자적 용역) NFT는 최소한의 인적 개입을 요구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만 공급되므로 전자적 용역의 정의에 부합함

125) NFT라는 수단 자체에 의해 부여되는 독특성에 공급의 주된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함

- EU 부가가치세 이행규정은 ‘전자적 용역’이란 인터넷 또는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그 성격상 공급이 본질적으로 자동화되어 있고,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정보기술 없이는 공급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¹²⁶⁾¹²⁷⁾
- NFT 거래는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되며, 특히 기초자산이 디지털자산인 경우 디지털자산의 공급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므로 전자적 용역의 정의에 부합함

- 현재 주된 의견은 NFT 거래를 ‘전자적 용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NFT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만약 NFT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바우처와 유사하지만, 디지털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할 수 있음
 - 대다수는 NFT를 전자적 용역으로 간주하지만, 개별 사례별 분석이 필요함¹²⁸⁾

(2)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 처리

- (민팅) 민팅 서비스는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목적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민팅 서비스는 인적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공급을 위해서는 정보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용역’에 해당함
 - 그렇지만 가스료(gas fee)의 수취자를 식별하기 어려우며 민팅과 가스료 간의 법적관계가 불명확하여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126) Article 7(1),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2/2011

127) EU 부가가치세 이행규정은 전자적 용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하고 범위에 포함되는 것(예: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상품의 공급)과 포함되지 않는 것(예: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CD-ROM형식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예시하고 있음

128) 같은 뜻으로 Deschâtres and McCarthy(2022)는 대부분의 NFT는 전자적 용역에 해당될 것이지만, NFT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판매되는 기초자산의 세법상 성격의 검토인 것으로 주장함(Deschâtres and McCarthy(2022), p. 193.)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공급과 대가 간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 (NFT의 매매 등)

- 창작자의 1차 거래 및 2차 거래: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창작자가 사업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만, 창작자의 판매가 간헐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참고로 NFT 약관에 의해 NFT 로열티 수취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음
- 무료 공급: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지침」 제16조 또는 제2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¹²⁹⁾
- 가스료: ‘민팅’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NFT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과세대상 거래로 분류됨

□ (P2E 게임 NFT의 획득)

- 온라인게임에 참여하여 NFT를 수령하는 것은 전자적 용역거래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일반적으로 P2E NFT의 획득과 온라인게임 참가비 등 간에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게임 플레이어가 온라인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 플레이어는 무료로 게임을 하고 스폰서와 광고로 게임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P2E 생태계에서 NFT의 획득과 온라인게임 참가비 간의 직접적 연관성은 사례별로 조사되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129) 사업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간주공급거래를 말함

(3) EU회원국의 NFT 부가가치세 처리 현황

- (스페인) NFT를 통해 '디지털 아트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목적상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하여 일반세율(21%)을 적용함
 - 스페인은 2022년 3월 10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포토샵으로 편집된 사진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NFT는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함
 - 쟁점 거래는 이미지파일 또는 디지털파일에 대한 물리적 전달 없이 NFT를 통해 디지털진위인증서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 '디지털 아트 서비스'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목적상 '전자적 용역'으로 판단함

- (벨기에) NFT는 디지털 컬렉션 또는 디지털 아트작품으로 간주함
 - 벨기에 재무부는 2021년 11월 의회의 질문에 대해 NFT는 구매자의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디지털 컬렉션 또는 디지털 아트작품으로 보아 21%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함

- (노르웨이) NFT는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며, NFT를 민팅하는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밝힘
 - 노르웨이 과세관청은 2022년 12월, NFT는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며 디지털아트의 공급은 실물 예술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힘
 - 디지털아트의 공급 유형에 불문하고(NFT로 공급되는 경우를 포함) 디지털아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나) EC Working Paper No. 1070. “VAT treatment of sales of skins in the secondary market,” 2023. 10. 16.과 EC Working Paper No. 1090. “Qualification as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of sales of skins in the secondary market for VAT purposes,” 2024. 9. 23.

- 보고서는 온라인게임 내의 스킨(게임 NFT 포함) 매매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 검토함
 - 덴마크는 NFT, 특히 온라인게임 내 ‘스킨’으로 알려진 디지털자산의 매매거래 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 EC 부가가치세 위원회에 질의함
 - 스킨은 온라인게임 내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데¹³⁰⁾ 사용되며 플레이어 간에 이전될 수 있음
 - 질의 사례에서 납세자는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하여 스킨을 획득한 후, 이 중 일부를 제3의 플랫폼에서 10~20%의 이윤을 남기고 판매함¹³¹⁾
 - EC Working Paper No. 1070은 스킨의 부가가치세 성격, 스킨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 EC Working Paper No. 1090은 스킨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측면의 성격에 대해 검토함
 - 1차 거래: 게임업체 등으로부터 발행되어 게임플레이어에게 제공되는 거래
 - 2차 거래: 1차 거래로 획득한 스킨의 매매거래
- EC는 스킨과 같은 디지털자산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¹³²⁾
 - (1차 거래) EU 부가가치세 이행규정의 ‘전자적 용역’의 정의에 부합함
 - (2차 거래) 스킨은 본질적으로 디지털상품에 해당하므로 ‘전자적 용역’에 해당함

130) 예를 들어 플레이어 캐릭터의 유니폼, 추가생명, 무기 등이 될 수 있음

131) 게임플랫폼에서 플레이어는 스킨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이전할 수 있으나, 현금거래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이러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3의 플랫폼이 생겨남

132) 참고로 「민법」 측면에서 스킨은 게임업체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및 사용권으로 분류됨

- 시스템에 의해 자동발행되는 1차 거래와는 달리 2차 거래 시에는 인적 개입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다) EC Working Paper No. 1080, "Crypto art and VAT," 2024. 3. 4.

- 보고서는 크립토아트 NFT의 부가가치세 목적상 성격과 실물 예술품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함
 - 질의에서 예술가는 1,000개의 고유한 디지털아트작품을 제작하여 직접 또는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 검토 받음
 - 보고서상 크립토아트 NFT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창작·판매·인증되는 디지털 예술의 하위 장르를 말함
 - NFT를 통해 관리되는 실물예술(tangible art)은 크립토아트 NFT에서 제외함
- EC는 크립토아트 NFT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EU 부가가치세준칙은 통화 관련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준칙상 통화란 지불수단 이외 다른 실질적 용도가 없는 것을 의미함
 - 크립토아트 NFT는 지불수단 외에도 다른 실용적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목적상 통화로 해석될 수 없음
 - 크립토아트 NFT는 관람, 수집, 작가지원,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구매됨
 - 크립토아트 NFT와 재화 및 용역을 교환하는 거래에서 크립토아트 NFT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크립토아트 NFT가 통화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이는 물물교환거래임
- EU 부가가치세준칙은 예술품에 대해 마진과세제도 및 경감세율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크립토아트 NFT는 해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U 부가가치세준칙은 예술품, 중고품 등 특정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사업자는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고, 공급사슬 중 이전 단계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하는 미술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음
- 현행 준칙상 마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예술품은 유형자산만을 의미하므로 크립토티 NFT는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다만 크립토티 NFT 거래 역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준칙의 마진과세제도 적용 범위의 확장이 선결되어야 함
- 또한 예술품에 대한 경감세율 또한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크립토티 NFT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¹³³⁾

라) EU 작업문서 공개 후 발표된 주요 회원국의 과세지침

- (프랑스) 2024년 2월에 프랑스 과세당국은 NFT는 기초자산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일반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발표함¹³⁴⁾
 - NFT 이전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NFT를 위한 별도의 부가가치세 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NFT의 이전거래는 토

133) 예술의 진흥이라는 「헌법」적 가치 및 재정중립성 차원에서 크립토티 또한 예술작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감면세율이 적용되는 크립토티에 대한 정의(예: NFT와 결합되어 독특하고 대량 생산되지 않은 작품만을 예술로 간주) 및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Cannas and Spada(2024), pp. 60~71.)

134) BOI-RES-TVA-000140, “RES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 Champ d'application et territorialité - Qualification des opérations réalisées à l'aide de jetons non fongibles dits « NFT » au regard des règles de la TVA,” <https://taxnews.ey.com/news/2024-0769-french-tax-authorities-conclude-general-vat-rules-apply-to-nfts> (accessed June 27, 2025); BDO, “France - VAT treatment of NFTs clarified,” <https://www.bdo.global/en-gb/insights/tax/indirect-tax/france-vat-treatment-of-nfts-clarified#:~:text=The%20ruling%20acknowledges%20that%20France,if%20NFTs%20were%20not%20involved> (accessed June 27, 2025)

큰 자체가 아닌 토큰이 표상하는 기초자산이 NFT 이외의 방법에 의해 이전되었
다면 적용되었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해야 함

- 예를 들어 NFT가 유·무형자산의 소유권 증서로서 기능한다면 NFT 이전거래는
토큰 그 자체가 아닌 표상하는 기초자산과 연관된 것임

○ 프랑스 과세당국은 세 가지 유형의 NFT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예시함

- 디지털수집용카드 NFT: 디지털카드는 무형자산이므로 용역에 해당하며, 수집
용 카드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거의 자동화된 방식
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전자적 용역임

- 크립토포아트 NFT: 저작물의 소유권 또는 NFT에 첨부된 경제적 권리 모두 부가
가치세 목적상 용역에 해당하며,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작품 제작에 인적 개입
이 우세한 경우에는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¹³⁵⁾

- 게임개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NFT: NFT 발행 시점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스웨덴) 2024년 3월에 스웨덴 과세당국은 크립토포아트 NFT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새로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힘¹³⁶⁾

○ 크립토포아트 NFT는 디지털저작물과 NFT가 결합된 새로운 전자적 용역임

- 디지털아트는 원본이 아니므로 NFT라는 수단 없이는 독립된 가치가 없으며,
NFT 또한 디지털아트 없이는 독립된 가치가 없음¹³⁷⁾

- 디지털저작물과 NFT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인위적임

135) 예술작품에 대한 5.5%의 경감세율은 유형자산에만 적용되므로 디지털아트 NFT는 경감세율의 적
용대상이 아니며, 저작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양도로 보아 10%의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20%의 표준세율이 적용됨

136) Skatteverket, "Non-fungible token (NFT) med ett digitalt verk kopplat till NFT: n,
mervärdesskatt,"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444372.html?date=2024-03-28> (accessed July 2, 2025)

137) 같은 뜻으로 NFT는 복제 가능한 디지털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하여 돈이 안 되는 디지털 세상을 돈이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의견이 있음(이시한(2022), pp. 16~21.)

- 따라서 NFT의 전송과 디지털저작물은 단일거래를 형성할 정도로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NFT 이전거래에 디지털아트 저작권이 수반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개별 사실판단 대상임

다. 조세행정

- EU는 2023년 10월 EU 과세당국 간 암호자산 정보교환을 위한 지침(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이하 “DAC8”)¹³⁸⁾에 합의하여 2026년부터 시행 예정임
- DAC8은 EU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지침으로 OECD의 CARF를 EU 법체계에 반영한 것으로서 EU 역내 암호자산 거래의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함
 - OECD는 암호자산 관련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세무당국이 매년 암호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를 발표함¹³⁹⁾
- EU 회원국은 보고의무자로부터 암호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매년 과세당국 간 정보를 교환할 예정임
- NFT는 일반적으로 MiCA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DAC8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의 대상임¹⁴⁰⁾
 - DAC8은 암호자산은 MiCA에 정의한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DAC8의 적용대상 암호자산은 암호자산 중 중앙은행디지털통화, 전자화폐(Electronic

138)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139) 기획재정부,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다자간 정보교환협정(MCAA) 서명」, 보도자료, 2024. 11. 27.,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1497&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5. 7. 2.

140) European Commission, “DAC8,”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tax-transparency-cooperation/administrative-co-operation-and-mutual-assistance/directive-administrative-cooperation-dac/dac8_en (accessed June 23, 2025)

Money), 보고의무자가 결제·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적절히 판단한 암호자산을 제외한 것임¹⁴¹⁾

- 이는 MiCA와 DAC8의 법적 지향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MiCA는 EU 시장의 규제를 위한 법령인 반면, DAC8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보교환지침임
 - OECD의 CARF에서도 결제·투자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NFT는 보고대상 암호자산에 해당하며 마켓플레이스에 거래되는 NFT는 일반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됨¹⁴²⁾

2. 미국

가. NFT 규제

- 미국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 및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¹⁴³⁾
 -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 CEN),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주요 규제기관은 SEC와 CFTC이며 이들 간 관할권 불분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함¹⁴⁴⁾
 - SEC는 디지털토큰 거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이며 CFTC는 상품(commodity)인 디지털자산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에 해당함

141)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Annex I (4)(b)12. and Annex I (4)(b)13

142) OECD(2023), p. 22.; p. 51.

143) 강동익 외(2023), p. 36.; 류경은(2024), pp. 13~15.

144) 김갑래·황세훈(2025), pp. 8~11.; 류경은(2024), p. 14.

- 트럼프 정부는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해 정의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 마련의 준비 작업에 착수함¹⁴⁵⁾
 - 디지털자산이란 암호화폐, 디지털토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분산원장에 기록된 모든 디지털 가치표현을 말함
 -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직속 실무작업단(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을 신설하여 디지털자산의 규제 및 입법안을 권고하는 보고서 제출을 명령함
 -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발행·운영에 대한 연방 규제체계를 제안하여야 함

- 미국 의회도 상·하원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기반을 마련 중에 있음
 - 하원은 2024년 5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 확보를 도모하는 FIT21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법안을 통과시킴¹⁴⁶⁾
 - 디지털자산을 ‘제한된 디지털자산(restricted digital asset)’, ‘디지털상품(digital commodity)’,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으로 구분함
 - 디지털상품과 제한된 디지털자산의 구분 기준으로 ‘탈중앙화 시스템’을 제시함
 - 제한된 디지털자산은 SEC가, 디지털상품은 CFTC가,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규제됨
 - 상원은 2025년 6월에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인 GENIUS Act(Guk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W. Stablecoins)를 통과시켰으며

145) The White House,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strengthening-american-leadership-in-digital-financial-technology/> (accessed June 20, 2025)

146) 상원 통과 및 최종 제정은 되지 않았음(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4763/all-actions?s=1&r=1&q=%7B%22search%22%3A%5B%22Financial+Innovation+and+Technology+for+the+21st+Century+Act.%22%5D%7D> (accessed June 20, 2025); 류경은(2024), pp. 40~46.

2025년 7월 대통령 서명을 완료함

- NFT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
 - 미국 규제기관은 NFT의 법적 성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NFT의 증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SEC는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 대표적 NFT인 Bored Ape Yacht Club의 제작사인 유가랩스(Yuga Labs)에 대한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2025년 2월, 2025년 3월 제재 없이 조사를 종결함¹⁴⁷⁾
 - 2025년 SEC 관계자는 NFT 로열티를 지급하는 토큰을 포함한 상당수의 NFT는 「연방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견을 밝힘¹⁴⁸⁾
 - 미국 의회는 NFT의 법적 성격 및 규제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티몬스 및 토레스 하원의원은 2024년 12월 NFT Act(New Frontiers in Technology Act)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은 주로 개인·가족·가정용으로 개발된 NFT¹⁴⁹⁾는 투자계약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¹⁵⁰⁾
 - FIT21 법안은 NFT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발전 상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¹⁵¹⁾

147) Bloomberg Law, “NFT Marketplace OpenSea Says the SEC Is Ending Its Investigation,” <https://news.bloomberglaw.com/banking-law/nft-marketplace-opensea-says-the-sec-is-ending-its-investigation> (accessed June 20, 2025); 『Digital Today』, “NFT 증권 아니다”... 美 SEC, 유가 랩스 조사 종료, 2025. 3. 4.,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528>, 검색일자: 2025. 6. 20.

148) Cointelegraph, “SEC’s Peirce says NFT royalties do not make tokens securities,” <https://cointelegraph.com/news/nft-royalties-not-securities-sec-peirce> (accessed June 20, 2025)

149) 예술품, 음악작품, 문학작품, 기타 지적재산권, 수집품, 상품, 가상토지 또는 비디오 게임 자산, 로열티 포인트, 권리, 라이선스, 티켓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NFT가 포함됨(H. R. 10544, §2.)

150) Congress.Gov, “H.R.10544 - New Frontiers in Technology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10544> (accessed June 20, 2025)

151) House of Representatives(2024), p. 3324.

나. 소득세 과세제도

-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디지털자산이란 암호화된 보안, 분산원장 기타 유사한 기술에 기록된 가치의 디지털표현을 의미함¹⁵²⁾
 - 미국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폭 넓게 정의하고 있음
 - 미국 연방국세청(이하 'IRS')은 디지털자산의 유형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교환가능한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및 NFT를 예시하고 있음¹⁵³⁾

1) 비트코인 등의 교환토큰

- IRS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세법상 자산(property)에 해당하므로 자산에 대한 일반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¹⁵⁴⁾
 - 미국 「내국세입법」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을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property)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일부 예외항목을 별도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¹⁵⁵⁾
 - 창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발명, 모형,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문학·음악·예술 창작품, 편지나 메모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재고자산 또는 사업용으로 판매되는 자산 등이 제외됨
 - 개인이 사적 또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은 세무목적상 자산에 해당함¹⁵⁶⁾
 - IRS는 비트코인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혔으나, 구체적 자산 유형은 언급하

152) I.R.C. §6045(g)(3)(D)

153) IRS,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filing/digital-assets> (accessed June 18, 2025)

154)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Q2.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accessed June 18, 2025)

155) I.R.C. §1221

156) IRS, "Topic no. 409, Capital gains and losses,"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accessed June 20, 2025)

지 않음

- 가상화폐가 상품, 증권, 금융계약, 그 외의 다른 어떤 것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자산인지는 의견을 밝히지 않음

□ 자산의 자본이득은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으로 구분하여 과세됨¹⁵⁷⁾

- 미국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산출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분류과세 방식에 의해 과세하고 있음

□ 단기 자본이득은 경상소득과 합산하여 0~35%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경상소득에 비해 낮은 0~20%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수집품 등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¹⁵⁸⁾

- 장기 자본이득은 납세자의 지위¹⁵⁹⁾ 및 연간 총소득에 따라 일반적으로 0~20%의 3단계 누진세율(일반 자산)이 적용됨
- 반면 수집품 등에 대해서는 25% 또는 28%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수집품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투자자산이며, 일반 자본이득과는 달리 경제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됨¹⁶⁰⁾

157)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p. 10.

158) I.R.C. §1.; IRS, "Topic no. 409, Capital gains and losses,"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accessed June 19, 2025); I.R.C. §1.; IRS, "IRS releas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5," <https://www.irs.gov/newsroom/irs-releas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5> (accessed June 19, 2025)

159) 미혼 및 별도신고 기혼자, 부부합산 납세자, 세대주의 지위를 말함

160) IRS, "IRS releas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5," <https://www.thetaxadviser.com/issues/2019/nov/taxation-collectibles/> (accessed June 19, 2025); AICPA(2023), p. 7.

2) NFT

가) Notice 2023-27.

- IRS는 NFT의 「내국세입법」상 수집품 해당 여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2023년에 유권해석을 발표함¹⁶¹⁾
 - 「내국세입법」은 ‘수집품’에 대해서는 개인연금계좌와 관련된 세무처리,¹⁶²⁾ 장기 자본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세율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 ‘수집품’이란 모든 예술작품, 양탄자, 골동품, 금속, 보석, 우표, 코인, 주류, 그 외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¹⁶³⁾ 사적 유형자산을 말함¹⁶⁴⁾

- IRS는 NFT를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여 기록되는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로 규정하고, NFT의 기초자산에는 디지털파일에 대한 권리 및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함¹⁶⁵⁾
 - NFT의 소유자는 디지털파일과 관련된 권리를 제공받거나, 디지털파일 이외의 자산 등과 관련된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디지털파일 이외의 기초자산으로는 입장권, 유형자산에 대한 소유권증빙 등을 예시함

- IRS는 본 유권해석을 통해 NFT의 세무상 성격은 NFT 그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질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힘¹⁶⁶⁾
 - 이른바 ‘투과분석법(look-through analysis)’에 의해서 NFT의 세무상 성격을

161) IRS, Notice 2023-27

162) I.R.C. §408(m)

163) 약기 및 역사적 물체(문서, 의류 등)이 포함됨(26 C.F.R. §1.408-10)

164) I.R.C. §1(h)(5); I.R.C. §408(m)(2)

165) IRS, Notice 2023-27, Section 2

166) IRS, Notice 2023-27, Section 3

분석하여야 하며,¹⁶⁷⁾ 이와 같은 경우 NFT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권리 또는 NFT와 연계된 자산 등으로 보아야 함

- 예를 들어 보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NFT는 보석으로 보아 미국 「내국세입법」상 ‘수집품’에 해당함

□ IRS는 NFT가 디지털파일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자산을 표상하는 경우 수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 의견 청취를 비롯한 추가 검토 후 지침을 발행할 예정으로 밝힘

○ IRS와 미국 재무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디지털파일은 수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밝힘¹⁶⁸⁾

- 법에서 수집품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은 모두 유형자산이므로 IRS의 의견은 현행 법령에 충실한 해석이며, 디지털아트가 기초자산인 NFT를 수집품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¹⁶⁹⁾
- 무형자산 또한 수집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아트가 기초자산인 NFT를 수집품으로 보는 경우 디지털아트의 정의 및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¹⁷⁰⁾

○ 다만 최종 검토지침을 추가로 발표하지 않았음

167) 참고로 미국 회계기준에서는 NFT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NFT 구매자의 회계처리를 설명한 전문가 자료에서도 IRS와 마찬가지로 NFT를 통해 획득한 권리의 성격에 따라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함(KPMG(2024), p. 22.)

168) IRS, Notice 2023-27, Section 4

169) ABA(2023), pp. 11~14.

170) Behrendt(2023), p. 53.; NYSBA(2023), pp. 12~16.

나) NFT의 소득과세¹⁷¹⁾¹⁷²⁾

- IRS는 NFT의 소득과세처리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NFT의 세무상 처리는 기초자산의 성질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자산거래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임
 - NFT의 가치는 NFT가 표상하고 있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함¹⁷³⁾
 - NFT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기초자산의 이전을 위한 스마트컨트랙트의 실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함
 - IRS는 수집품의 자본이득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투과분석법을 제시함
 - NFT를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납세자가 사적 또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세무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NFT 역시 세무상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산에 적용되는 일반 세법 규정이 적용될 것임¹⁷⁴⁾
- NFT의 민팅 단계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디지털자산을 이용하여 가스비를 지불하는 단계에서 자본이득 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
 - NFT의 민팅은 과세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팅을 위해 지불한 가스비는 NFT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가산될 수 있음

171) IRS, "Taxpayers need to report crypto, other digital asset transactions on their tax return," <https://www.irs.gov/newsroom/taxpayers-need-to-report-crypto-other-digital-asset-transactions-on-their-tax-return> (accessed June 25, 2025)

172) GORDAN LAW, "Complete Guide to NFT Taxes," <https://gordonlaw.com/learn/nft-tax-guide/> (accessed June 25, 2025); Simons+Simons, "How the US taxes cryptocurrency and NFTs," <https://www.simmons-simmons.com/en/features/tax-on-cryptocurrency/clocsvism01bau6x4gre85d5s/how-the-us-taxes-cryptocurrency-and-nfts> (accessed June 20, 2025); FreemanLaw, "The Taxation of NFTs," <https://freemanlaw.com/the-taxation-of-nfts/> (accessed June 20, 2025); KPMG, "Trying to 'mint' the next Bored Ape? What to know before you go NFT," <https://kpmg.com/us/en/articles/2022/what-to-know-nft.html?utm> (accessed July 21, 2025)

173) Abbott(2023), p. 473.

174) Arredondo(2024), p. 512.

- 창작자는 민팅에 대한 대가로 가스비를 지불하게 되며 이는 통상 디지털자산으로 지불하게 됨
 - 디지털자산은 세무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창작자가 가스비 지불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문제가 발생함¹⁷⁵⁾
- NFT의 매도는 사업성이 있거나 창작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품인 경우는 경상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매매대가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경상소득으로 분류하여 0~37%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부담함
 - 창작자가 직접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던 창작품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분류됨¹⁷⁶⁾
 - NFT가 창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학·음악·예술 창작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경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그 외: NFT의 자본이득(매매대가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장·단기 보유 여부 및 수집품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소득세를 부담함
- NFT 구매를 위해서 디지털자산을 지불하는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¹⁷⁷⁾
- 일반적으로 NFT 구매자는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으로 구매대가를 지급함
 - 디지털자산은 세무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NFT 구매자가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함

175)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Q.14,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accessed June 26, 2025)

176) I.R.C. §1221.; 신상화·송은주·이서현(2019), p. 42.

177)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Q.16,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accessed June 25, 2025)

- 게임 NFT에 대한 별도의 공식 지침은 없으나 가상화폐와 같이 세무상 자산으로 보아 자산에 대한 일반 과세지침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¹⁷⁸⁾
 - 외부 환전이 가능한 게임 NFT는 세무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함
 - P2E 게임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얻는 시점에 디지털자산의 공정가격을 경상소득에 산입하고, 추후 매각 시점에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인식함
 -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게임 NFT를 구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자본이득 과세대상 사건에 해당함
 - 게임 환경 내에서만 사용되는 가상화폐(즉 환전이 불가능한 가상화폐)의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¹⁷⁹⁾

- 창작자가 수령하는 NFT 로열티의 소득 구분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¹⁸⁰⁾
 - IRS는 NFT 로열티의 과세방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음
 - 로열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로열티는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반면, NFT 로열티는 재판매에 대한 계약상 수익 분배로서 로열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그 외 창작자의 용역대가, 조건부 판매대가, 창작자가 특정 거래소를 통해 NFT를 거래하도록 장려하는 재량적 지원금으로 볼 수도 있음

다. 소비세 과세제도

- 미국은 주(state)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소매 판매 및 사용에 대해 판매세(retail sales tax)를 과세함¹⁸¹⁾

178) Gordon Law Group, "Complete Guide to NFT Taxes (2025 Update)," <https://coinledger.io/blog/cryptocurrency-games-taxes> (accessed June 25, 2025)

179) IRS, "IRS Statement on Changes to Virtual Currency Webpage," <https://www.irs.gov/newsroom/irs-statement-on-changes-to-virtual-currency-webpage> (accessed June 20, 2025); AICPA&CIMA, "No need to report some transactions in video game currency, IRS says," February 19, 2020, <https://www.journalofaccountancy.com/news/2020/feb/video-game-currency-tax-reporting-23013/> (accessed June 30, 2025)

180) NYSBA(2023), pp. 35~36.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재화·용역의 공급단계마다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판매세는 최종판매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함
- 판매세는 유형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소매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만, 일부 주정부는 특정 용역 및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음¹⁸²⁾
-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및 용역은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음
- 다수의 주정부는 비트코인 등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¹⁸³⁾
- 비트코인은 디지털방식으로 기록되고 디지털 특성을 갖는 암호화를 사용하기 때 문에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
- 대부분의 주정부는 NFT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지침을 발표한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판매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¹⁸⁴⁾
- 미네소타주와 펜실베이니아주는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NFT의 과세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힘¹⁸⁵⁾

181) 박훈(2015), p. 110.; EY(2024), p. 2029.; IBFD -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 Sales and Use Tax - 13.3. Taxable events - 13.3.2. Importation (Last Reviewed: 1 October 2024)

182) EY(2024), p. 2028.; pp. 2031~2034.

183) Bloomberg Tax, Portfolio 109-2nd: Taxation of Cryptocurrency and Other Digital Assets - X. State Taxation - D. State & Local Indirect Taxes - 2. Taxability of Digital Assets for Sales Tax Purposes - a. Introduction and b. Cryptocurrency

184) Bloomberg Tax, Portfolio 109-2nd: Taxation of Cryptocurrency and Other Digital Assets - X. State Taxation - D. State & Local Indirect Taxes - 2. Taxability of Digital Assets for Sales Tax Purposes - c. Nonfungible Tokens (NFTs) - (1) Introduction; Walter Hellerstein and Andrew Appleby, "State Taxation of Cryptoassets: Key Concepts and Emerging Guide, Tax notes, 2023. 11. 27.," <https://www.taxnotes.com/tax-notes-state/cryptocurrency/state-taxation-cryptoassets-key-concepts-and-emerging-guidance/2023/11/27/7hk2k> (accessed July 2, 2025)

185) Minnesota Department of Revenue, Sales Tax Fact Sheet 177 Digital Products. ; PA.GOV, "Non-Fungible Tokens (NFTs)," <https://www.pa.gov/agencies/revenue/resources/tax-types-and-information/sales-use-and-hotel-occupancy-tax/non-fungible-tokens.html#accordion-ded0552879-item-9304d86c50> (accessed July 2, 2025)

-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표상하는 NFT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유형자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판매세 과세대상임
- 한편 미시건주는 NFT란 고유한 식별코드와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블록체인상의 디지털코인으로 정의하며, 이는 디지털상품에 해당하므로 판매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힘¹⁸⁶⁾
 - 미시건주는 디지털상품에 대해서 판매세를 과세하지 않음
- 이하에서는 가장 최근에 NFT 관련 판매세 과세지침을 발표한 워싱턴주의 소비세 제도를 기술함
 - 워싱턴주는 2022년 7월 NFT에 대한 잠정지침 발표 후 2024년 12월에 최종지침을 발표함¹⁸⁷⁾

1) 워싱턴 주의 판매세 과세제도 개요

- 워싱턴주는 유형자산 및 디지털자산과 특정 용역의 소매거래에 대해서 판매세를 부과함¹⁸⁸⁾¹⁸⁹⁾
 - 디지털상품(digital goods), 디지털코드(digital codes), 디지털 자동화서비스(digital automated services)에 대해서도 판매세가 부과됨
 - 디지털상품은 사운드, 이미지, 데이터, 정보 등이 단일 또는 조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말함

186) Michigan Department of Treasury, "SALES AND USE TAXATION OF COMPUTER SOFTWARE AND DIGITAL GOODS," <https://www.michigan.gov/taxes/rep-legal/rab/2023-revenue-administrative-bulletins/revenue-administrative-bulletin-2023-10> (accessed July 2, 2025)

187) Department of Revenue Washington State, "Interim statement regarding the taxability of non-fungible tokens (NFTs)," <https://dor.wa.gov/laws-rules/interim-statement-regarding-taxability-non-fungible-tokens-nfts> (accessed June 27, 2025)

188) RCW §82.04.050

189) Department of Revenue Washington State, "Digital products including digital goods," <https://dor.wa.gov/forms-publications/publications-subject/tax-topics/digital-products-including-digital-goods> (accessed June 30, 2025)

- 디지털코드란 소비자가 하나 이상의 디지털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코드를 말함
 - 디지털자동화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사진공유서비스, 자동차 이력보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함
 - 디지털상품 등은 다운로드, 스트리밍, 구독서비스, 네트워킹 등 접근방식과 관계 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함
 - 보안구역, 청소구역 등 특정 구역은 판매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일반적으로 워싱턴주의 주민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가격에 6.5%의 세율을 적용한 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원격 판매자 또는 마켓플레이스 중개자에게도 판매세 납부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¹⁹⁰⁾
- 워싱턴주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원격 판매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한 자는 워싱턴주에 등록하고 판매세를 납부해야 함
 - 마켓플레이스 중개자¹⁹¹⁾의 경우에도 상기한 원격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워싱턴주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가 있는 경우에는 워싱턴주에 등록하고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를 대신하여 판매세를 납부해야 함

2) 비트코인 등 교환토큰

- 개인의 투자목적 비트코인 매매거래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¹⁹²⁾

190) RCW §82.08.020., §82.08.050., §82.08.052., §82.04.067; IBFD - United States - Washington - Corporate Taxation - 6. Sales and Use Taxes - 6.3. Wayfair economic nexus standards (Last Reviewed: 15 September 2024)

191) 마켓플레이스 중개자란 판매자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직·간접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주문 제안·수락의 전송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며,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결제처리서비스, 보관서비스, 주문을 받는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자임

192) Department of Revenue Washington State, "Interim Statement Regarding Bitcoin: Payments, Mining, and Investment Income," <https://dor.wa.gov/laws-rules/interim-statement-regarding-bitcoin-payments-mining-and-investment-income> (accessed July

-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경우 비트코인은 구매 대가로 간주됨

3) NFT¹⁹³⁾

- NFT는 복제, 대체 또는 세분화될 수 없는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로서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특정 유형의 제품에 대한 진위성과 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함
- NFT는 일종의 대체가능토큰인 암호화폐와는 구분됨

- NFT와 관련된 세무처리는 NFT로 표현되는 기초자산(예.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함¹⁹⁴⁾
- IRS의 ‘투과분석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됨
 - 예를 들어 NFT가 유형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낸다면 NFT의 판매는 유형자산의 판매로 간주되어야 함
- 워싱턴주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므로 구매대상이 독립형 디지털코드인 경우 과세됨
 - NFT는 본질적으로 기초자산인 디지털제품의 소유권 또는 진위성 증명서를 구성하는 코드 또는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구매자는 독립형 디지털 제품을 매수한 것으로 분류함
 - 예로는 음악, 디지털아트, 사진, 비디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FT가 있음
- 구매대상이 독립형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구매자는 NFT가 아닌 기초자산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판매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 기초자산이 판매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에 판매세가 과세되며, 판매

1, 2025)

193) NFT 과세 지침(ETA 3241.2024., 2024. 12. 5.)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194) Walter Hellerstein and Andrew Appleby, “State Taxation of Cryptoassets: Key Concepts and Emerging Guide,” 2023. 11. 27., <https://www.taxnotes.com/tax-notes-state/crypto-currency/state-taxation-cryptoassets-key-concepts-and-emerging-guidance/2023/11/27/7hk2k> (accessed July 2, 2025)

세 비과세대상인 경우에는 판매세가 과세되지 않음

- 마켓플레이스 중개자에게 적용되는 납세자 등록·납부의무 등은 NFT 마켓플레이스 중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NFT 로열티와 관련된 판매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워싱턴주는 유형자산 및 디지털자산과 법에서 열거한 영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판매세를 부과함
 - 워싱턴주 과세당국은 소비세 관련 과세지침을 통해 NFT 로열티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 및 직업세(B&O Tax)¹⁹⁵⁾ 과세문제만을 언급함

라. 조세행정

- 납세자는 연방소득세 신고 시 연중 디지털자산(NFT 포함)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2025년 거래분부터는 디지털자산의 브로커도 고객의 디지털자산 거래내역 등을 IRS에 보고할 예정임
 - 20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브로커는 고객의 디지털자산 거래내역을 IRS에 보고하여야 함
 - 「내국세입법」 제6045조는 주식 등의 중개업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IIJA는 보고대상에 디지털자산을 추가함
 - 2024년 관련 재무부 및 국세청의 최종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디지털자산 브로커는 2025년 이후 이루어진 거래부터 보고의무를 지게 됨¹⁹⁶⁾

195) 소득에 대한 과세의 일종임

196) IRS, "Final regulations and related IRS guidance for reporting by brokers on sales and exchanges of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newsroom/final-regulations-and-related-irs-guidance-for-reporting-by-brokers-on-sales-and-exchanges-of-digital-assets> (accessed July 2, 2025); T.D. 10000, 89 FR 56480. (2024. 7. 9.)

- 디지털자산 브로커란 통상적 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타인의 매매를 위해 준비된 자를 말함¹⁹⁷⁾
 -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점유하는 브로커, 보관형 디지털자산거래 플랫폼 운영자, 특정 디지털자산 지불처리업체 등이 해당함¹⁹⁸⁾

- 브로커에 의한 보고대상인 디지털자산은 ‘암호화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록된 가치의 디지털 표현¹⁹⁹⁾’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NFT 및 스테이블코인도 보고대상임²⁰⁰⁾
 - NFT는 기초자산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보고대상임²⁰¹⁾
 - 로열티프로그램 및 리워드를 표상하는 디지털자산의 처분,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되어 네트워크 외부로 양도·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는 비디오게임 내의 디지털자산 등 폐쇄형 디지털자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됨²⁰²⁾

- 디지털자산 브로커는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별로 보고해야 하지만, 적격 NFT의 경우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면제됨²⁰³⁾

197) Reg. §1.6045-1(a)(1)

198) IRS, “Final regulations and related IRS guidance for reporting by brokers on sales and exchanges of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newsroom/final-regulations-and-related-irs-guidance-for-reporting-by-brokers-on-sales-and-exchanges-of-digital-assets> (accessed July 2, 2025)

199) 디지털자산이 수반된 개별 거래내역이 실제로 장부에 기록되었는지와 무관하며, 현금은 제외됨.

200) Reg. §1.6045-1(a)(19); Bloomberg Tax, Portfolio 109-2nd: Taxation of Cryptocurrency and Other Digital Assets - VIII. Information Reporting and Tax Return Compliance - F. 2024 Final Regulations for Reporting Digital Asset Transactions and Form 1099-DA.

201)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26 CFR Parts 1, 31, and 301 [TD 10000] RIN 1545-BP71, Summary of Comments and Explanation of Revisions - I. Final § 1.6045-1 - A. Definition of Digital Assets Subject to Reporting - 2. Nonfungible Tokens

202) Bloomberg Tax, Portfolio 109-2nd: Taxation of Cryptocurrency and Other Digital Assets - VIII. Information Reporting and Tax Return Compliance - F. 2024 Final Regulations for Reporting Digital Asset Transactions and Form 1099-DA. - 1. Reg. §1.6045-1.- b. Reportable Digital Assets.; T.D. 10000, 89 FR 56480. (2024. 7. 9.)

203) Reg. §1.6045-1(d)(10)(iii)(A); Reg. §1.6045-1(d)(10)(iii)(B)

- NFT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소액거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적격 NFT의 소액거래는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합산보고를 허용하여 브로커의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함
 - 적격 NFT란 분할할 수 없고 고유하며 보유자에게 증권·상품·규제대상 선물계약 등에 대한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을 말함²⁰⁴⁾
 - 납세자별로 연간 적격 NFT 거래금액이 600미국달러 이하인 경우 보고의무가 면제됨
 - 적격 NFT 거래와 관련하여 브로커는 다음의 사항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보고함
 - 고객 이름, 주소 및 납세자식별번호
 - 적격 NFT 매매로 인한 연간 총수익금액(거래비용 차감 후)
 - 적격 NFT 판매 총건수
 - 브로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격 NFT의 창작자(또는 민팅한 사람)가 첫 번째 판매에서 발생한 총수익금액
 - 그 외 양식 또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정보
- 또한 원칙적으로 디지털자산 브로커에게는 예비원천징수의무(Back-up Withholding)가 있지만, 적격 NFT 거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됨²⁰⁵⁾
- 디지털자산 브로커는 고객이 유효한 납세자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IRS로부터 고객의 납세자번호 오류 또는 미등록 통보를 수취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디지털자산 매매대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함²⁰⁶⁾
 - 원천징수세율은 24%이며, 미이행 시 브로커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적격 NFT는 분할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정부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예비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204) Reg. §1.6045-1(d)(10)(iv)

205) Notice 2024-56

206) I.R.C. §3406(a)(1)

3. 일본

가. NFT 규제

- 일본은 디지털자산을 암호자산과 증권형 암호자산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통해 규제함²⁰⁷⁾
 - 일본은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이원적으로 적용하고 있음²⁰⁸⁾
 - 「자금결제법」은 암호자산이 기능적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규율하는 반면, 「금융상품거래법」은 투자대상으로서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경우(즉 증권형 암호자산)를 규율함

- 일본 금융청은 지급수단으로서의 암호자산이나 증권형 암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에 대해 투자대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NFT가 표상하는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대상으로 밝힘²⁰⁹⁾
 - 현 시점에서 규제 대상은 「자금결제법」상 암호자산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증권형 암호자산의 범위를 전제로 함
 - NFT 활용 실태를 보면 NFT가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많고, 각 NFT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융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다만 NFT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금융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금결

207) 홍병진 외(2024b), pp. 38~43.; 박수영(2023), p. 9.; pp. 16~17.

208) 자본시장연구원(2025), p. 1.; p. 7.

209) 金融庁(2025), p. 8.

제법」 규제대상인 암호자산에서 제외되며,²¹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NFT는 암호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²¹¹⁾

- 발행자 등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물품 등 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할 것²¹²⁾
- 가격, 수량, 기술적 특성, 사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물품 등 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²¹³⁾

나. 소득세 과세제도

1) 비트코인 등의 교환토큰

- 일본 국세청은 암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암호자산 양도차익은 잡소득(기타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²¹⁴⁾
 - 일본 소득세법은 소득의 범위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일시소득, 양도소득, 잡소득 등 열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일본 「소득세법」은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²¹⁵⁾
 - 일본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란 금전채권 이외 일체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²¹⁶⁾

210) 金融庁(2023), pp. 5~6.

211) pwc, “金融庁「事務ガイドライン」(暗号資産交換業者関係)の改正 - 各種トークンの暗号資産該当性に関する解釈の明確化等 -,” <https://www.pwc.com/jp/ja/legal/news/assets/legal-2023406.pdf>, 검색일자: 2025. 7. 1.; 김종호(2022), pp. 215~217.

212) 예를 들어 발행자 또는 취급자의 계약이나 상품설명서 등에서 결제수단으로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거나 시스템상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213) 예를 들어 최소 거래 단위당 가격이 일반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고가(1,000엔 이상 등)이거나 발행수량을 최소거래단위로 나눈 수량(100만개 이하 등)이 제한적일 것

214) 홍병진 외(2024b), pp. 52~53.

215) 일본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 9가지 소득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소득은 모두 잡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공적 연금 등의 잡소득, 업무와 관련된 잡소득, 그 외 기타 잡소득으로 구분됨²¹⁷⁾
 - 업무와 관련된 잡소득은 부업과 관련한 소득 중 영리 목적으로 지속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 기타 잡소득은 그 외의 모든 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일본 「소득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분류됨²¹⁸⁾
- 일본 국세청은 암호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암호자산의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기타 잡소득’으로 분류함
 -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란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므로 동산, 부동산 외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자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²¹⁹⁾
- 다만 암호자산 관련 수입금액이 3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업무와 관련된 잡소득)으로 구분함²²⁰⁾
 - 장부관리 여부에 따라 장부를 관리하면 사업소득, 그 외의 경우는 잡소득(업무와 관련된 잡소득)으로 구분함
 - 업무와 관련된 잡소득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됨²²¹⁾

216) 일본 「소득세법」 기본통달 33-1.

217) 일본 국세청, “No.1500 雑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00.htm> (accessed July 28, 2025); 일본 국세청, “所得の種類と課税方法,”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ebiki/2024/01/1_03.htm (accessed June 30, 2025); 일본 국세청, “法第35条《雑所得》関係,”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shotoku/04/09.htm> (accessed July 1, 2025); 일본 국세청, “No.1500 雑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00.htm> (accessed July 1, 2025);金子 宏(2021), pp. 196~197.

2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120.

219)金子 宏(2021), p. 265.

220) 国税庁(2023b), p. 16.

221) 일본 「소득세법」 기본통달 35-2.

〈표 IV-1〉 일본: 「소득세법」상 암호자산 거래 소득 구분

구분		소득구분
수입금액 300만엔 이하		잡소득(기타 잡소득)
수입금액 300만엔 초과	장부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잡소득(업무 관련 잡소득)
	장부를 관리하는 경우	사업소득

주: 일본 「소득세법」은 암호자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목적상 암호자산을 양도소득 대상 자산이 아닌 지급수단으로 보고, 암호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다만 수입금액이 300만엔을 초과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2) NFT

- 일본 「소득세법」상 NFT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일본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NFT 또는 FT를 이용한 거래의 과세 관계’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²²²⁾
- 일본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NFT 또는 FT를 이용한 거래의 과세 관계(Tax Answer No. 1525-2)’를 발표하고²²³⁾, 2023년 1월 NFT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의 과세지침(FAQ 과세지침)을 발표함²²⁴⁾
 - NFT란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데이터에 유일한 성질을 부여하여 진위성을 보장하고 거래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토큰으로 정의함
 - 과세지침은 NFT와 관련된 소득세·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소비세, 원천징수, 재산·채무 명세서 등 일반적인 세무 처리 기준을 사례별로 안내하고 있음
- NFT가 암호자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과 교환 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NFT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유형은 개별 판단대상임²²⁵⁾

222) 일본 국세청, “No.1525-2 NFTやFTを用いた取引を行った場合の課税関係,”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25-2.htm> (accessed June 30, 2025); 国税庁(2023b)

223) 일본 국세청, “No.1525-2 NFTやFTを用いた取引を行った場合の課税関係,”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25-2.htm> (accessed June 30, 2025)

224) 国税庁(2023a)

- NFT가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자산’²²⁶⁾에 해당하고 비사업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됨
 - Tax Answer No. 1525-2는 NFT에 관한 기본적인 과세 판단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FAQ 과세지침은 NFT가 표현하는 기초자산과 그에 수반되는 민사상 권리·의무 관계를 전제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설명한다는 평가가 있음²²⁷⁾
- 그 외의 경우에는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표 IV-2〉 일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NFT와 소득 구분

NFT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자산과의 교환 가능 여부	소득 구분	
여	NFT가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자산에 해당	양도소득 ¹⁾
	NFT가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자산에 미해당	잡소득 사업소득 ²⁾
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1. 일본 국세청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임

1) 다만 NFT의 양도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2) 거래규모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가) 디지털아트와 연계된 NFT 거래

□ 일본 국세청은 과세지침을 통해 크립토아트 NFT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봄

□ (1차 거래) 창작자가 열람권이 부여된 크립토아트 NFT를 민팅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래는 ‘디지털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설정’으로 간주되며 관련 소득은 잡소

225) 일본 국세청, “No.1525-2 NFTやFTを用いた取引を行った場合の課税関係,”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25-2.htm> (accessed June 30, 2025)

226) 譲渡所得の基因となる資産に該当する場合

227) 大石篤史 et al.(2023), p. 35.

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²²⁸⁾

- 잡소득의 소득금액은 NFT 양도대가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²²⁹⁾
 - NFT 양도대가를 마켓플레이스 내 유통 통화토큰으로 받은 경우 해당 토큰의 시가를 양도수입으로 계산함²³⁰⁾
- 국세청이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NFT의 과세 범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해 ‘디지털아트의 열람에 관한 권리’라는 개념을 창안했다는 견해가 있음²³¹⁾
 - 디지털아트의 열람 행위는 「저작권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단순한 시청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NFT의 과세 범위를 넓게 설정하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음
- 참고로 창작자가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미술품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잡소득으로 과세됨²³²⁾

□ (2차 거래) 크립토틀아트 NFT를 구매 후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하는 2차 거래는 ‘디지털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고, 관련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함²³³⁾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228) 国税庁(2023a), p. 3.: 일본 국세청, “No.1906 給与所得者がネットオークション等により副収入を得た場合,”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906.htm> (accessed June 27, 2025)

229) 다만 ‘디지털아트의 열람에 관한 권리의 설정’으로 인한 소득이 잡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잡소득 중 업무 관련 잡소득인지 기타 잡소득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된 바 없음(일본 세무법인(kaoria), “国税庁「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 (FAQ)」の解説①,” <https://kaoria-tax.com/archives/29> (accessed June 27, 2025))

230) 해당 토큰이 암호자산 등 재산적 가치를 가진 자산과 교환할 수 없는 등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양도한 NFT의 시장가치(시장가치가 없는 경우 양도한 NFT의 매출원가 등)를 그 토큰의 시가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함

231) Yamada&Partners, “NFTと税務,” https://www.yamada-partners.jp/research-report/20230720#anchor05_01 (accessed June 26, 2025)

232) 신상화 외(2019), pp. 66~67.

233) 国税庁(2023a), pp. 7~8.

- NFT 양도대가를 마켓플레이스 내 유통 통화토큰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토큰의 시가로 판매수입을 계산함²³⁴⁾
- 종합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경우 특별공제액 50만엔을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함
- 양도손실은 다른 소득과의 통산이 가능하나 NFT 보유 목적이 주로 취미, 오락, 휴양, 또는 감상 목적인 경우에는 통산할 수 없음
- 과세지침에서는 크립토틀 NFT와 실물 미술품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실물 미술품의 양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크립토틀 NFT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²³⁵⁾
 - 일본은 ‘생활에 통상 필요한 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에 1개·1조당 30만엔 이하의 미술품도 포함됨²³⁶⁾
 - 동 법의 적용대상인 동산은 유체물을 의미하므로 크립토틀 NFT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한편 NFT가 재고자산에 해당하거나 NFT의 양도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지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나) 상품 구매 시 무상 취득한 구매처에서 사용 가능한 토큰(NFT)

- 상품 구매 시 구매처인 법인이 발행한 토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²³⁷⁾ 이는 법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새롭게 취득한 경제적 가치는 일시소득으로 분류됨²³⁸⁾
 - 일시소득은 영리를 위한 지속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것을 말하며, 노

234) 다만 해당 토큰이 암호자산 등과 교환이 불가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판매된 NFT의 시장 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NFT의 취득비용)을 해당 토큰의 시가로 보는 것이 가능함

235) 泉 紬也(2022), pp. 165~166.; みんなの経営応援通信, “NFT아트と税金 [第2回: 아트NFTを売却した場合は美術品と同様に非課税? デジタルアートの税金のルールについて考える。],” https://letter.sorimachi.co.jp/taxnews/20230405_01 (accessed August 11, 2025)

236) 일본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9호

237) 해당 토큰은 구매처에서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음

238) 国税庁(2023a), p. 11.

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 또는 자산 양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함²³⁹⁾

- 경품·복권 등의 상금, 경마·경륜 등의 환급금, 생명보험 일시금·손해보험 만기 환급금,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품 등이 있음

다) 블록체인 게임의 보상으로 취득한 게임 내 통화 토큰(NFT)

□ 블록체인 게임 이용을 통해 보상으로 게임 NFT와 관련된 소득은 수령 시점에 잡소득으로 분류됨²⁴⁰⁾

- 다만 수령 시점에 게임 NFT가 암호자산과 교환할 수 없는 등 시가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령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추후 게임 NFT를 암호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다른 토큰으로 교환할 때 과세함
- 게임 NFT의 평가는 취득 시점마다 수행되어야 하지만 게임 NFT 베이스로 증감액을 관리해 월말 또는 연말에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토큰이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게임 외의 자산과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한편 국세청 지침은 게임 NFT의 취득 후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잡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하나로 과세될 것으로 보임

239) 일본 국세청, “No.1490 一時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90.htm> (accessed August 8, 2025)

240) 国税庁(2023a), pp. 12~13.

〈표 IV-3〉 일본: 사례별 NFT의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구분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거래 성격
디지털아트 연계 NFT	1차 유통 (창작자→제3자)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	디지털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설정
	2차 유통 (제3자 간)	양도소득 ¹⁾	디지털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양도
상품 구매 시 무상 취득한 구매처 사용 가능 토큰(NFT)		일시소득	법인의 증여
보상받은 블록체인 게임 통화 토큰(NFT)		잡소득 ²⁾	-

주: 1. 일본 국세청은 소득을 ‘수입 등의 형태로 새롭게 취득하는 경제적 가치’로 정의하며, 어떤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음

- 1) 다만 NFT가 재고자산에 해당하거나 NFT의 양도가 영리 목적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구분됨
- 2) NFT가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게임 외의 자산과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1) 비트코인 등의 교환토큰²⁴¹⁾

- 일본 「소비세법」은 암호자산을 지급결제수단으로 보아 암호자산의 공급에 대해 소비세를 비과세함²⁴²⁾
- 「소비세법」상 암호자산은 「자금결제법」 제2조 제14항에 따른 암호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차용함

241) 일본 「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일본 「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홍병진 외(2024b), p. 50.

242) 일본 소비세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 같이 상품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나 일본에서는 이를 부가가치세라 하지 않고 소비세라 함(국중호(2019), pp. 3~13.)

2) NFT

- 일본 「소비세법」은 NFT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2023년 1월 국세청이 발표한 과세지침을 통해 크립토틀 NFT 거래의 「소비세법」상 처리 기준이 제시됨²⁴³⁾
 - 과세지침은 NFT거래 전반에 적용될 「소비세법」 적용원칙은 다루지 않고, 크립토틀 NFT 거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음
 - 비록 과세관청이 NFT의 「소비세법」상 적용원칙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NFT의 개별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소비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²⁴⁴⁾
 - NFT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고, NFT 자체는 전자적 증표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성질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
 - 과세관청은 ‘NFT 그 자체의 양도’가 아니라 관련된 법적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채택한 것으로 보임²⁴⁵⁾

- 이하에서는 국세청 과세지침에서 제시하는 크립토틀 NFT의 「소비세법」상 세무처리를 살펴봄²⁴⁶⁾

- (1차 거래) 창작자가 크립토틀 NFT를 민팅하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3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전기통신 이용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며 소비세가 과세됨²⁴⁷⁾

243) 소득세·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소비세, 원천징수, 재산·채무 명세서 관련 일반적 세법상 처리 기준을 설명함

244) note.com, “【前編】NFT取引は本当に「資産の譲渡」に該当しないのか? ~ 国税庁「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の分析と検討~, ” <https://note.com/taxmh/n/n367be35c3cec?utm> (accessed July 23, 2025)

245) NFT는 기술에 불과하여 독립된 거래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만일 NFT가 독자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상 거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NFT 양도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note.com, “【前編】NFT取引は本当に「資産の譲渡」に該当しないのか? ~ 国税庁「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の分析と検討~, ” <https://note.com/taxmh/n/n367be35c3cec?utm> (accessed July 23, 2025))

246) 国税庁, “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 ” <https://www.nta.go.jp/law/joho-zeikaisshaku/shotoku/shinkoku/0022012-080.pdf> (accessed June 27, 2025)

- 「소비세법」상 전기통신 이용 용역의 제공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작물 제공과 기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자산의 양도 등의 결과의 통지, 기타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용역의 제공 이외의 것을 말함²⁴⁸⁾
 -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게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함
 - 저작물의 제공에는 해당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거래도 포함됨
 - 과세관청이 크립토타트 NFT의 1차 거래의 성격을 ‘외형은 창작자가 민팅한 NFT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이지만, 실질은 NFT에 연계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거래’로 보아 「소비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있음²⁴⁹⁾
 - NFT는 독립적 거래대상이 아닌 도구(기술)에 해당하며 NFT 구매자는 NFT에 연계된 디지털아트 등의 ‘이용권’을 취득한 점에 기초한 결정임
 - 또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제공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은 이를 ‘전기통신 이용 용역의 제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²⁵⁰⁾
- (2차 유통) 창작자로부터 크립토타트 NFT를 구매한 후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 이 거래는 디지털아트의 이용 허락에 따른 ‘이용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의 일환으로 대가를 받고 이루어질 경우 소비세가 과세됨²⁵¹⁾
- 이 사례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저작물 이용 허락도 제작자만이 할 수 있음(NFT 양도 시에는 저작물 이용권만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²⁵²⁾

247) 国税庁(2023a), pp. 17~18.

248) 일본 「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3

249) note.com, “【前編】NFT取引は本当に「資産の譲渡」に該当しないのか? ~ 国税庁「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の分析と検討~, ” <https://note.com/taxmh/n/n367be35c3cec?utm> (accessed July 23, 2025)

250) note.com, “【前編】NFT取引は本当に「資産の譲渡」に該当しないのか? ~ 国税庁「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の分析と検討~, ” <https://note.com/taxmh/n/n367be35c3cec?utm> (accessed July 23, 2025)

251) 国税庁(2023a), pp. 19~20.

- 즉 본 거래는 저작권 양도도, 저작권 이용 허락 행위도 아니며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아트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임
- 한편 양도자가 원래 급여소득자이더라도 NFT 양도를 반복·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됨

〈표 IV-4〉 일본: NFT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크립토티 NFT 사례)

구분	과세대상 ¹⁾	거래 성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크립토티 NFT	1차 유통 (창작자→제3자)	용역의 제공	전기통신 이용 용역의 제공 ²⁾	여
	2차 유통 (제3자 간)	자산의 양도	디지털아트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권의 양도 ³⁾	여

주: 1) 일본 소비세 과세대상은 ① 자산의 양도, ② 자산의 대여, ③ 용역의 제공임

2) 전기통신 이용 용역의 제공이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작물 제공과 기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용역을 말함. 이때 저작물의 제공에는 해당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거래도 포함됨

3) 이 사례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저작물 이용허락도 제작자만이 할 수 있음. NFT 양도 시에는 저작물 이용권만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 실물 미술품 NFT에 대한 「소비세법」상 규정이나 과세지침은 없으나 실물 미술품에 대한 소비세 처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실물 미술품은 소비세 경감세율(8%) 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준세율(10%)로 소비세가 과세됨

라. 조세행정

- 국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NFT가 해당 연도 12월 31일

252)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저작물이용 허락받은 자는 이용방법이나 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이용권)(일본 「저작권법」 제63조)

시점에 암호자산 등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자산과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산채무조서의 제출이 필요함²⁵³⁾

- 소득과 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납세자는 보유 재산·채무에 관한 사항을 익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암호자산 등이 있음
- NFT 또한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며 납세자는 NFT 종류별(아트, 음악, 스포츠, 게임 등), 용도별(일반용, 사업용), 소재별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한편 NFT는 국외재산조서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²⁵⁴⁾

- 일본 거주자로서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5천만엔 이상의 외국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재산신고서를 익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일본은 NFT는 보유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국외 또는 국내 소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국외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한 NFT는 국외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 재산조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독일

가. NFT 규제

□ 독일은 「은행업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 및 증권 관련 일반법의 개정을 통해 암호토큰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갖추²⁵⁵⁾

253) 国税庁(2023a), pp. 21~22.; 国税庁(2023C), p. 31.; 일본 국세청, “No.7457 財産債務調査の提出義務,”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tei/7457.htm> (accessed July 23, 2025)

254) 国税庁(2023a), p. 23.; 일본 국세청, “No.7456 国外財産調査の提出義務,”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tei/7456.htm> (accessed August 11, 2025)

- 금융당국은 토큰을 크게 증권토큰, 통화·결제토큰 및 유틸리티토큰으로 분류하고 규제함
 - 증권토큰: 자산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배당지급청구권, 의결권, 권리상환청구권, 이자지급청구권)을 부여한 토큰. 주식, 채무증권 등과 같이 금융상품 속성을 가진 토큰을 포함함
 - 통화·결제토큰: 토큰발행자가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로 의도한 토큰(가상화폐라고도 함)을 말하며 결제토큰은 내재가치가 없는 토큰(비트코인 등)과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구분됨
 - 유틸리티토큰: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토큰(예: 입장권, 바우처)

- NFT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는 없으며,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NFT의 법적 성격은 사용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밝힘²⁵⁵⁾
 - NFT 역시 다른 FT와 마찬가지로 NFT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발행 이후 해당 권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함
 - NFT는 기술적으로 암호자산과 동일한 시스템 위에 구축되어 자금세탁위험²⁵⁷⁾이 있으나 설계방식, 사용 목적, 성격, 기능, 구조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이러한 위험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현재까지 NFT가 금융 및 증권 규제법의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없지만 증권 등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1,000개의 NFT가 동일한 상환 및 이자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

255) 홍병진 외(2024a), p. 55.

256)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 “Non-Fungible-Token: Auf den Inhalt kommt es an,” 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Fachartikel/2023/fa_bj_2303_NFT.html (accessed July 4, 2025)

257) 익명 거래, 국가 관리감독 범위에서 벗어난 거래(금융기관의 부재, 해외 플랫폼 이용, 결제 수단 및 경로(Mixer, Tumbler, DEX 등) 사용)

나. 소득세 과세제도

1) 비트코인 등 교환토큰²⁵⁸⁾

-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암호자산과 관련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독일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농림업소득, 영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총 일곱 가지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은 다른 여섯 가지 소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네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음²⁵⁹⁾
 - ①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예: 종신연금, 개인연금 등)
 - ② 개인적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 ③ 기타 의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
 - ④ 「의원법」 등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소득
 - 암호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소득은 '③ 기타 의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6유로 미만은 비과세함
 - 암호자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② 개인적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분류되어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됨
 - 기타소득은 다른 유형의 소득과 합산하여 0~45%의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됨
 - 다만 개인적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유형의 소득과 통산되지 않음
- 암호자산이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소득으로 과세됨²⁶⁰⁾
 - 암호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득·보유·처분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은 영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유형의 소득과 합산하여 0~45%의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됨

258)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5a), p. 17.; p. 19.

259) 독일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5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pp. 399~400.

260) 홍병진 외(2024a), pp. 72~75.; pp. 150~151.

2) NFT

- 독일 재무부는 2025년 3월 발표한 과세지침 “특정 암호자산의 「소득세법」상 취급에 관한 개별 질문들”에서 다음과 같은 NFT의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인 과세지침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힘²⁶¹⁾
 - 대체 가능한 암호자산은 하나의 명칭(예: 비트코인, 이더)하에 동일한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교환 가능한 특징이 있는 반면, NFT는 고유한 개별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것과 대체 불가능한 특징이 있음
 - 현재 NFT의 활용 범위는 주로 디지털아트와 수집품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 NFT에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 및 지침이 부재하여 세무처리 방법이 불명확하지만 NFT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임²⁶²⁾
 - NFT는 분할이 불가능하며 고유하고 유일한 개체로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디지털 또는 물리적 대상을 상징함
 - NFT 구성 방식은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업로드, 메타데이터, 외부 링크, 트랜잭션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NFT는 기초자산 자체의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²⁶³⁾

261)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5a), p. 4.; 해당 과세지침은 2022년 5월 10일 발표한 과세지침 “가상화폐 및 기타 토큰의 소득세 취급에 관한 개별 질문들”을 대체한 것으로, 용어 대체(가상화폐 및 기타 토큰→ 암호자산), 세무신고·협력·기록의무 관련 내용 추가, 세무보고서, Claming 절차, 초단위 및 일일 환율 적용에 대한 규정 추가 등이 추가됨(NWB DATENBANK, “Einkommensteuer | Einzelfragen zur ertragsteuerlichen Behandlung bestimmter Kryptowerte (BMF),” <https://datenbank.nwb.de/Dokument/1064420/> (accessed July 7, 2025))

262) beck-online, “Non-Fungible Token (NFT) und Ertragsteuern,”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zeits%2Fdstr%2F2023%2Fcont%2Fdstr.2023.2142.1.htm&pos=3&hlwords=on> (accessed July 4, 2025); Moskat and Schaar(2022), p. 28.

263) HAUFE, “Kryptowährungen: Ertragssteuerliche Behandlung im Privat ... / 2.3.7 Non-Fungible-Token (NFT),” <https://www.haufe.de/id/beitrag/kryptowaehrungen-ertragssteuerliche-behandlung-im-privat-237-non-fungible-token-nft-HI15613610.html> (accessed July 3, 2025)

- 특히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자산과 밀접하게 연계된 NFT는 전통적인 코인류에 비해 비사업용자산(개인적인 자산)으로 분류하는 데 법적 논쟁의 여지가 적은 편임

- 독일 「소득세법」상 개인적 자산의 자본이득은 기타소득이며 개인적 자산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NFT를 기초자산과 구분된 별도의 개인적 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NFT의 기초자산이 부동산 소유권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 처리에는 차이가 없을 것임²⁶⁴⁾

□ NFT 관련 소득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영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음²⁶⁵⁾

- NFT 제작·판매 활동이 사업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영업소득으로 봄²⁶⁶⁾
- NFT 작업이 예술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²⁶⁷⁾
 - 법에서 정한 특정 직업군의 직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함²⁶⁸⁾
 - 다만 수익 창출 의사가 없는 취미활동은 경제활동이 아닌 사적활동으로 간주되고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²⁶⁹⁾²⁷⁰⁾

264) 개인적 자산의 양도차익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그 외의 자산은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과세됨. 따라서 NFT 기초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과세 여부에 있어 차이를 일으키나 그 외 개인적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 처리에 있어 차이가 없음

265) Moskat and Schaar(2022), pp. 28~29.

266) 독일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NWB DATENBANK, "Einkünfte aus dem Verkauf von NFTs - eine steuerliche Einordnung," <https://www.nwb-experten-blog.de/einkuenfte-aus-dem-verkauf-von-nfts-eine-steuerliche-einordnung/> (accessed July 4, 2025)

267) NWB DATENBANK, "Einkünfte aus dem Verkauf von NFTs - eine steuerliche Einordnung," <https://www.nwb-experten-blog.de/einkuenfte-aus-dem-verkauf-von-nfts-eine-steuerliche-einordnung/> (accessed July 4, 2025); Moskat and Schaar(2022), pp. 28~29.

268) 자유직업소득과 영업소득은 동일하게 이익소득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추가적인 영업세 납세의무, 소득금액 계산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p. 376.)

269) Smartsteuer, "Liebhaberei,"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l/liebhaberei/> (accessed September 16, 2025)

- 그 외의 경우 NFT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암호자산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과세됨²⁷¹⁾
 - NFT의 양도소득은 암호자산과 같이 기타소득 중 ‘② 개인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 그 외 NFT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 중 ‘③ 기타 역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 한편 P2E 게임을 이용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 중 ‘③ 기타 역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²⁷²⁾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1) 비트코인 등 교환토큰

- 독일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암호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²⁷³⁾
 - 암호자산이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대체적이고 직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고, 지급수단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²⁷⁴⁾
 - 법정화폐 공급과 이의 증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데, 부가가치세 목적상 암호자산과 법정화폐를 동등하게 취급함²⁷⁵⁾

270) 수익 창출 의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Haufe, “Liebhaberei / 1.4 Feststellung der -Gewinn- oder Überschuss - erzielungsabsicht,” <https://www.haufe.de/id/beitrag/liebhaberei-14-feststellung-der-gewinn-oder-ueberschusserzielungsabsicht-HI1636100.html> (accessed September 16, 2025); nwbDATENBANK, “Einkommensteuer | Feststellungen bei Liebhaberei,” <https://datenbank.nwb.de/Dokument/712375/> (accessed September 16, 2025)

271) Moskat and Schaar(2022), p. 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pp. 399~400.

272) Haufe, “Blockchain-Technologie und Steuerrecht: Besteuerung von ... / 3.4.5.9 Play2Earn,” <https://www.haufe.de/id/beitrag/blockchain-technologie-und-steuerrecht-besteuerung-von-3459-play2earn-HI16855991.html> (accessed August 19, 2025)

273) 홍병진 외(2024b), p. 66.; UStAE 4.8.3. (3a); beck-online, “Umsatzsteuerliche Behandlung von Bitcoin und anderen sog. virtuellen Währungen,” <https://rsw.beck.de/zeitschrift/en/bc/news-beitraege/2023/06/28/umsatzsteuerliche-behandlung-von-bitcoin-und-anderen-sog.-virtuellen-w%C3%A4hrungen> (accessed July 3, 2025)

274) 단 가상게임머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NFT

- 독일은 NFT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 별도의 법률이나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해석을 제공하지 않았음²⁷⁶⁾
 - NFT 관련 세무 논의는 주로 소득세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일부 세무 자문업체의 평가만 있을 뿐 학술적 논의 역시 부족한 상황임

-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요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²⁷⁷⁾
 - 판매자가 사업자로서 행위하고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업이나 직업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자임²⁷⁸⁾
 -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NFT는 유체물이 아니며 법적으로 유체물과 동등하게 간주되지도 않으므로 NFT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반면 디지털자산이 재화인지 용역의 공급인지는 해당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NFT가 하나의 독립된 자산으로서 구매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매매할 수 있다면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음²⁷⁹⁾
 - 적용 세율 및 면세 여부: NFT로 토큰화된 대상, 즉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275)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8b호

276) beck-online, "Umsatzsteuer im Zusammenhang mit NFT,"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zeits%2Fmwstr%2F2023%2Fcont%2Fmwstr.2023.452.4.htm&pos=2&hlwords=on#S454> (accessed July 3, 2025)

277) beck-online, "Umsatzsteuer im Zusammenhang mit NFT,"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zeits%2Fmwstr%2F2023%2Fcont%2Fmwstr.2023.452.4.htm&pos=2&hlwords=on#S454> (accessed July 3, 2025)

278) 김유찬·이유향(2019), pp. 9~10.; 수익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는 이윤 추구 의도가 없는 경우도 해당함

279) Moskat and Schaar(2022), p. 29.

- 독일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9%이지만, 수집품 및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전·행사 등에 대해서는 7%의 경감세율이,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²⁸⁰⁾

□ NFT의 대표적 활용사례인 크립토틀 NFT의 경우, 전통적 미술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7%)이 적용되지만 디지털아트에 경감세율 대상 미술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지침이 발표된 바 없어 불분명함²⁸¹⁾

- 독일 「부가가치세법」은 ‘완전히 손으로 제작된 그림·드로잉 등 미술작품, 원본 판화·조각·석판화, 조각예술의 원작’의 공급을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⁸²⁾
- 해당 규정은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경우(수채화, 유화, 드로잉 등)에 적용되는데, 아이패드로 만든 그림을 전통적 의미의 예술작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처럼 크립토틀 NFT도 경감세율 적용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²⁸³⁾

□ 다만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C가 회원국 간 과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발간한 문서(Working Paper No. 1060 외)에 따라 NFT 관련 부가가치세를 처리할 것으로 보임²⁸⁴⁾

- EC의 작업문서에 구속력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논지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디지털재화가 토큰화된 경우 그 양도는 전자적 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아트의 토큰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80) UStG §12 (1)~(3)

281) Moskat and Schaar(2022), p. 30.

282) UStG §12 (2), Anlage 2 Nr. 53

283) Moskat and Schaar(2022), p. 30.

284) beck-online, “Umsatzsteuer im Zusammenhang mit NFT,”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zeits%2Fmwstr%2F2023%2Fcont%2Fmwstr.2023.452.4.htm&pos=2&hlwords=on#S454> (accessed July 3, 2025); beck-online, “Ausgewählte umsatzsteuerliche Fragen bei NFT-Transaktionen,” <https://beck-online.beck.de/?vpath=bibdata%2Fzeits%2FMWSTR%2F2024%2Fcont%2FMWSTR%2e2024%2e293%2e3%2ehtm#Y-300-Z-MWSTR-B-2024-S-293-N-3-GI-3> (accessed July 3, 2025)

- 예를 들어 한 미국 기업이 NFT 형태의 디지털수집카드를 온라인으로 독일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제공이 유일한 양도 방식이며 사람의 개입은 거의 필요하지 않고 고객은 NFT 구매를 통해 해당 카드의 이용권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 이는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됨
 - 또는 금 기반 NFT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담긴 NFT가 암호 자산지갑에 저장되며 NFT 양도 시 금과 소유권도 함께 이전되고 NFT가 단순히 소유권 증명 수단으로 간주된다면, 해당 거래는 금이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리될 것임
 - 또한 크립토아트 NFT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 한편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NFT 로열티 지급 방식은 추급권보상금²⁸⁵⁾과 유사하지만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나 해석이 없어 과세처리가 불확실함²⁸⁶⁾
- ECJ는 추급권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²⁸⁷⁾
 - 과세대상 요건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상호 간의 법적 관계와 그 관계 내에서 대가의 교환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추급권보상금은 이러한 대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NFT 로열티 수익 구조에도 이러한 ECJ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공식 견해는 확인되지 않음

285) 독일 「저작권법」 제26조

286) beck-online, “Ausgewählte umsatzsteuerliche Fragen bei NFT-Transaktionen,” <https://beck-online.beck.de/?vpath=bibdata%2Fzeits%2FMWSTR%2F2024%2Fcont%2FMWSTR%2e2024%2e293%2e3%2ehtm#Y-300-Z-MWSTR-B-2024-S-293-N-3-GI-3> (accessed July 3, 2025); beck-online, “Umsatzsteuer im Zusammenhang mit NFT,”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zeits%2Fmwstr%2F2023%2Fcont%2Fmwstr.2023.452.4.htm&pos=2&hlwords=on#S454> (accessed July 3, 2025)

287) EuGH v. 19.12.2018 - C-51/18, Kommission/Österreich, MwStR 2019, 189 mAnm Herbert

라. 조세행정

- 독일은 2025년 6월 27일 EU 2023/2226(DAC8)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 발표를 통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사 및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외 과세당국과 보고된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²⁸⁸⁾
 - 해당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암호자산의 범위에는 탈중앙 방식으로 발행된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EU 2023/1114에 따른 전자화폐토큰, NFT가 포함됨
- 또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암호자산에 대한 세무신고 및 기록·보관의무를 이행해야 함²⁸⁹⁾
 - 거래별 명의/약칭, 암호자산 수량·취득원가·양도가액, 매수·매도 시점 및 당시 환율, 보유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거래의 복잡성과 규모에 따라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음
 - 과세당국은 근거 자료(거래 내역, CSV 파일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급·거래소 계정의 스크린샷 제출 요구도 가능함
 - 고소득자는 수입과 필요경비에 대한 기록 및 문서를 6년간 보관해야 함²⁹⁰⁾

288) 독일 연방재무부,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23/222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1_Legislaturperiode/2025-06-27-DAC8-G/0-Gesetz.html (accessed August 18, 2025); pwc, “Referentenentwurf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23/2226 (DAC8),” <https://blogs.pwc.de/de/steuern-und-recht/article/249660/referentenentwurf-eines-gesetzes-zur-umsetzung-der-richtlinie-eu-2023-2226-dac8/> (accessed August 18, 2025)

289)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5a), p. 27.

290)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5a), p. 34.; § 147a AO; 고소득자는 근로소득, 자본소득, 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가 50만유로(2027년부터는 75만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함

5. 호주

가. NFT 규제

- 호주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NFT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는 없음²⁹¹⁾
-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회사, 증권거래, 금융서비스, 소비자신용에 관한 단일 규제 체계를 관할하며, 「증권·투자위원회법」, 「회사법」 및 「소비자신용보호법」에 의해 규율함
 - 디지털자산은 명칭과 관계없이 부여된 권리, 특징 및 제공 방식을 고려해 금융상품 여부를 판단하며,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ASIC의 규제 대상이 됨
 - 디지털자산에는 암호자산, 암호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준거 토큰, 스테이블 코인, 또는 토큰화된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디지털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경쟁·소비자법」에 따라 관할하며, 디지털자산 홍보자의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금지됨
- 디지털통화 교환·송금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CTF) 체제에 따라 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에 등록 의무가 있으며, 특정 거래 및 의심 활동 보고·기록 유지 의무 등을 부담함
 - 디지털통화 또는 암호화폐는 ‘물리적 형태가 아닌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화폐 유형’으로 ‘재화, 용역 또는 실물 화폐와 교환될 수 있고 정부에 의해 발행되거나 권한 하에 발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

291) IBFD - Crypto Assets - Chapter 5: Crypto Assets: Tax Law and Policy in Australia - Books (Last Reviewed: 19 December 2023); ASIC, “Updates to INFO 225: Digital assets: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https://www.asic.gov.au/regulatory-resources/find-a-document/consultations/cp-381-updates-to-info-225-digital-assets-financial-products-and-services/> (accessed September 3, 2025)

나. 소득세 과세제도

1) 비트코인 등 교환토큰

- 호주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은 「소득세법」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²⁹²⁾
 - 비트코인 등의 교환자산은 암호자산의 한 유형임
 - 암호자산이란 전자적으로 이전하거나, 저장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물을 의미하며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함
 - 암호자산에는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투자토큰, 게임토큰, NFT 등이 있음
 - 호주의 자본이득과세제도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암호자산이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함²⁹³⁾
 -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모든 종류의 재산, 재산 외의 법적·형평법상 권리를 말함²⁹⁴⁾

- 비사업적인 암호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며, 사업자가 암호자산을 사업의 일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소득으로 과세함²⁹⁵⁾²⁹⁶⁾

292) ATO, "What are crypto assets?,"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what-are-crypto-assets> (accessed July 8, 2025)

293) ATO, "What is capital gains tax?,"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apital-gains-tax/what-is-capital-gains-tax> (accessed July 21, 2025)

294)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ec. 108.5

295) ATO, "What are crypto assets?,"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what-are-crypto-assets> (accessed July 8, 2025); IBFD -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7. Capital gains (Last Reviewed: 9 February 2025)

296) ATO, "Crypto assets used in business,"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income-and-deductions-for-business/crypto-assets-and-business/crypto-assets-used-in-business> (accessed July 8, 2025); The Board of Taxation(2024), pp. 110~112.

- 1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적 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이 적용됨
- 암호자산이 개인용 자산으로서 취득가격이 1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함
 - 암호자산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물품 구매인 경우 암호자산은 개인용 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²⁹⁷⁾

2) NFT²⁹⁸⁾

- 호주 「소득세법」은 NFT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호주 국세청은 NFT를 암호자산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므로 다른 유형의 암호자산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과세될 것임
 - NFT란 다른 유형의 암호자산과 유사한 디지털기술에 기반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해당함²⁹⁹⁾
 - 일반적으로 디지털그림, 비디오 클립,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소유를 기록하는 수단이지만 유·무형자산의 소유관계를 기록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됨
 - 호주 국세청은 NFT를 암호자산의 한 분류로 판단함³⁰⁰⁾
- 호주는 소득세 목적상 NFT 그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취급해

297) ATO, "Crypto asset as a personal use asset,"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crypto-asset-as-a-personal-use-asset> (accessed July 9, 2025)

298) ATO, "Non-fungible tokens,"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transactions-acquiring-and-disposing-of-crypto-assets/non-fungible-tokens> (accessed July 9, 2025); Morton and Curran(2024), pp. 27~39.

299) ATO, "Non-fungible tokens,"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transactions-acquiring-and-disposing-of-crypto-assets/non-fungible-tokens> (accessed July 9, 2025)

300) ATO, "What are crypto assets?,"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what-are-crypto-assets> (accessed July 9, 2025)

- 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³⁰¹⁾
- 국세청은 예시를 통해 게임이용자가 온라인게임 보상으로 받은 카드(게임 NFT)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나 카드 내의 예술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게임 NFT는 수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 호주 「소득세법」은 수집품(예술품, 골동품 등)의 자본이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NFT가 사업 활동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NFT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통상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외 NFT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됨³⁰²⁾
 - NFT가 사업 활동의 일부로 이용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은 통상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해당 활동이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수익 창출 의사, 지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
 - 다만 사업 활동이 아닌, 여가시간에 즐거움을 위해 하는 취미활동은 세무신고의 무가 없으며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³⁰³⁾
 - NFT 로열티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통상소득으로 과세됨
 -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수령하는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사업 중단 이후에 수령하는 부분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됨
 - 비사업적인 NFT의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함
 - 취득가격 1만호주달러 이하의 개인용 자산³⁰⁴⁾ 및 취득가격 500호주달러 이하의 수집품(예술품, 골동품, 보석 등)의 자본이득은 비과세함

301) ATO, "Non-fungible tokens,"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transactions-acquiring-and-disposing-of-crypto-assets/non-fungible-tokens> (accessed July 9, 2025)

302) Morton and Curran(2024), pp. 33~36.

303) Australia Government, "Difference between a business and a hobby," <https://business.gov.au/planning/new-businesses/difference-between-a-business-and-a-hobby> (accessed September 17, 2025)

304) 예: 유명인의 초상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NFT(비사업적 열람권 부여)를 유명인의 친척이 구매하여 생일파티 때 사용하는 경우, 해당 NFT는 개인용 자산에 해당함

- 한편 기초자산이 실물미술품인 NFT와 크립토티 NFT 모두 자산에 대한 일반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나, 실물 미술품은 명백히 수집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크립토티 NFT가 수집품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함³⁰⁵⁾³⁰⁶⁾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1) 비트코인 등 교환토큰

- 호주 「부가가치세법」은 암호자산을 디지털통화와 그 외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디지털통화는 암호화기술과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거래를 보안하고 기록하는 암호자산의 한 유형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디지털가치단위를 말함³⁰⁷⁾
 - 대체 가능성을 지닐 것
 - 공급의 대가로 사용될 수 있을 것
 - 일반 대중이 실질적인 제한 없이 대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것
 - i) 어느 국가의 통화로 표시되지 않을 것
 - ii) 호주 또는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 또는 승인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될 것
 - 그 가치가 다른 자산의 가치에 의존하거나 파생되지 않을 것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그 공급을 지시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을 것
 - 디지털통화에는 비트코인(Bitcoin), 이더(Ether), 라이트코인(Litecoin) 등이 포함
 - 디지털통화가 아닌 암호자산에는 NFT, 특정 로열티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 가능한 로열티 포인트, 게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임토큰 및 스테이블코인 등이 있음

305) Morton and Curran(2024), pp. 21~24.

306) Morton and Curran(2024), pp. 21~24.

307) The Board of Tax(2024), pp. 189~190.

- 디지털통화의 공급은 화폐(money)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목적상 공급으로 보지 않음³⁰⁸⁾

2) NFT에 대한 과세제도³⁰⁹⁾

- NFT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비과세대상인 디지털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호주 국세청은 NFT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NFT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 호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란 유형의 개인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을 의미함³¹⁰⁾
- 호주 조세위원회는 모든 NFT에 일괄 적용되는 접근법은 없으며 납세자가 적절한 과세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명확화와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권고함³¹¹⁾
 - NFT 활용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NFT 관련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단일 방식은 없는 것이 분명하며 납세자가 적절한 처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함
 -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NFT가 기반하고 있는 기초자산, 권리 또는 대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으로 보임
 - 다만 NFT 로열티와 같이 NFT 거래가 기초자산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308) The Board of Tax(2024), p. 189.; IBFD - Australia - Goods and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3. Taxable Events 3.7. Virtual assets (Last Reviewed: 15 February 2025)

309) ATO, "Non-fungible tokens,"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transactions-acquiring-and-disposing-of-crypto-assets/non-fungible-tokens> (accessed July 9, 2025)

310) 최정희(2019), p. 34.; 호주 「부가가치세법」 § 195-1

311) The Board of Tax(2024), pp. 192~193.

라. 조세행정

- 호주는 OECD CARF의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11월에 2027년까지 CARF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로 호주 국세청과 외국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은 202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재무부는 2024년 11월 조세투명성 강화 및 국가 간 암호자산 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CARF 이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문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하였으며 아직 입법되지는 않음³¹²⁾
-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암호자산에 대한 세무신고 및 거래 내역 기록·보관(5년) 의무가 있음³¹³⁾
 - 암호자산의 매수·매도 거래 영수증, 거래 목적 및 거래상대방(암호자산 주소만으로도 가능) 기록, 거래소 기록, 거래 시점의 암호자산 가치를 호주달러로 환산한 기록, 디지털지갑 기록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호주 국세청은 암호자산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crypto asset data matching program)을 통해 납세의무자가 세무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한 암호자산 거래 및 계좌 데이터를 비교하고 암호자산 매수·매도자 및 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312) 호주 국세청, "Australia's implementation of the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amendments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4-11/c2024-598501-cp_0.pdf (accessed August 19, 2025); KPMG, "Australia: Issued Consultation on Implementation of CARF and Australia Contacts: CRS Amendments," <https://kpmg.com/us/en/taxnewsflash/news/2024/11/tnf-australia-consultation-on-cryptoasset-reporting-framework-and-crs-amendments.html> (accessed August 19, 2025)

313) ATO, "Keeping crypto records,"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keeping-crypto-records> (accessed September 12, 2025); ATO, "How to work out and report CGT on crypto,"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how-to-work-out-and-report-cgt-on-crypto> (accessed September 12, 2025)

V. 국제비교

1. NFT 규제

- NFT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음
 - 한국 법원은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서 디지털파일에 블록체인기술을 기반한 고유탈을 부여하여 소유권 및 전송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설명함
 - EC는 NFT란 분산원장에 저장된 디지털 단위로 식별코드와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함
 - 미국 국세청은 NFT란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여 기록되는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이며, NFT의 기초자산에는 디지털파일에 대한 권리 및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 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함
 - 일본 국세청은 NFT란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데이터에 유일한 성질을 부여하여 진위성을 보장하고 거래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토큰으로 정의함
 -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및 재무부는 NFT는 분산원장기술 기반 암호화 토큰으로 기술적 특성상 상호 대체 가능하지 않아 서로 교환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함
 - 호주 국세청은 NFT는 다른 암호자산과 유사한 디지털기술에 기반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설명함

- 조사대상국 모두 NFT와 교환토큰을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NFT를 총괄하는 별도의 규제체계를 두지 않고 개별 NFT별로 사실 판단하여 기존 법체계 내에

서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한국은 NFT의 발행 형태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권,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 NFT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음
- EU는 NFT는 금융적 사용도가 낮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암호자산 규제(MiCA)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외형이 NFT라고 하더라도 실제 기능이나 사용 형태가 대체 가능하거나 고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MiCA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MiCA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NFT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는 없음
- 미국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며, NFT의 법적 성격 및 규제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일본은 디지털자산을 암호자산과 증권형 암호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NFT는 개별 용도와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융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함
- 독일은 암호토큰을 증권토큰, 통화·결제토큰 및 유틸리티토큰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NFT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각 사안별 개별 판단사항으로 보고 있음
 - 현재까지 NFT가 「금융 및 증권규제법」의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없으나 실질이 증권 등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호주는 디지털자산은 명칭과 무관하게 부여된 권리, 특징 및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금융상품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NFT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를 두고 있지는 않음

2. NFT 과세제도

가. NFT 소득세 과세제도

1) 일반기준

- 조사대상국 모두 NFT와 관련한 「소득세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유권해석이나 과세지침을 통해 과세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독일은 NFT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 NFT 소득세 과세 시에는 NFT 자체보다 NFT가 표상하는 기초자산의 성격과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 처리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NFT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기초자산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임
 -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NFT는 가상자산과는 별개의 실체로 구분됨
 - NFT의 「부가가치세법」 처리와 관련된 유권해석에서 NFT는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함
 - 미국은 투과분석법(look-through analysis)을 적용하여 NFT의 세무상 성격은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국세청은 NFT의 소득과세 여부는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과세처리가 달라지는 것으로 봄
 - 독일은 NFT에 대해 「소득세법」상 규정이나 과세당국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다만 NFT가 디지털 또는 물리적 대상을 상징하는 특징이 있고 스마트컨트랙트의 구성 방식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NFT의 특성을 고려하

여 기존의 세법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호주 국세청은 NFT에 대한 과세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용 방식이나 보유 목적, 거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함
 - 다만 NFT가 어느 자산 유형에 속하는지는 명확히 밝힌 바 없음

- 한국과 일본은 교환토큰과 NFT를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호주는 NFT를 디지털자산(암호자산)의 한 종류로 보아 자산에 대한 일반 세법 규정을 적용하되, 교환토큰과 달리 개별 NFT가 표상하는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세부 과세처리는 달리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일본은 비트코인 등 교환토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잡소득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반면, NFT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유형은 개별 판단대상으로 봄
 - 미국, 독일, 호주는 교환토큰과 NFT를 디지털자산(암호자산)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은 세법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자산에 대한 일반 세법 규정을 적용함
 - 참고로 한국은 자본이득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 호주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이득 과세 측면에서는 NFT와 교환토큰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표 V-1〉 주요국의 NFT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법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유권해석 등	있음 ¹⁾	있음	있음	없음	있음
NFT 과세원칙	NFT를 기초자산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임	투과분석법에 따라 기초자산에 따라 판단함	NFT를 기초자산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임	NFT를 기초자산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임	NFT를 기초자산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임
교환토큰과 구분 여부	가상자산과 NFT를 구분	NFT, 교환토큰을 디지털자산의 한 종류로 봄 ²⁾	교환토큰과 NFT 구분	NFT, 교환토큰을 암호자산의 한 종류로 봄 ²⁾	NFT, 교환토큰을 암호자산의 한 종류로 봄 ²⁾

주: 1) 한국 과세당국이 2023년에 제공한 유권해석이 있으나 이는 특정 사례에 관한 해석으로 일반적인 과세처리에 대한 기준은 아님

2) NFT를 디지털자산(암호자산)의 한 종류로 보아 자산에 대한 일반 세법 규정을 적용하되, 교환토큰과 달리 개별 NFT가 표상하는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세부 과세처리는 달리할 것으로 보임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2) NFT 유형별 소득세 과세 처리

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

-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의 자본이득에 대해 한국·일본·독일은 기타소득(또는 잡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미국·호주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 한국은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미국은 가상화폐를 세법상 자산으로 간주하고 일반 자본이득세 제도를 적용함
 - 일본은 암호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기본적으로 잡소득(기타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함
 - 독일은 암호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개인용 자산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다만 독일은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은 자본소득으로 과세하며 그 외의 자산의 자본이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호주는 암호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일반 자산과 동일한 자본이득세 제도를 적용함

나) 크립토아트 NFT 및 실물미술품 NFT

- 한국, 미국, 일본, 호주는 크립토아트 NFT를 실물 미술품 NFT와 구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독일은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개인용 자산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함³¹⁴⁾
- 한국은 실물 미술품의 1차·2차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크립토아트 NFT의 경우 1차 거래소득은 디지털아트가 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2차 거래소득은 비과세함
- 미국은 창작자가 창작한 작품을 양도하여 얻는 1차 거래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2차 거래소득의 경우 크립토아트 NFT와 실물 미술품 모두에 대해 일반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규정을 적용하되 크립토아트 NFT는 실물 미술품과 달리 수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창작자의 창작품 양도차익은 경상소득으로 과세되나 크립토아트 NFT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미국 「소득세법」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집품 등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³¹⁵⁾
 - 미국 국세청은 실물 미술품은 수집품에 해당하나 크립토아트 NFT는 수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일본은 크립토아트 NFT를 실물 미술품과 구별하여 과세함
 - 일본은 크립토아트 NFT는 별도의 미술품이 아닌 ‘디지털아트 열람 권리’로 해석함

314) 비사업적 매매차익에 대해 기술함

315) 수집품, I.R.C. §1202의 적격 중소기업 주식 매각소득 중 과세대상 부분을 대상으로 함

- 1차 거래에서 크립토아트 NFT는 디지털아트 열람 권리의 설정으로 보아 잡소득으로 과세하며, 창작자가 실물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도 잡소득으로 과세함³¹⁶⁾
- 2차 거래에서 크립토아트 NFT를 디지털아트 열람 권리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실물 미술품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만 1개·1조당 30만엔 이하의 미술품 자본이득은 비과세되며 크립토아트 NFT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독일은 크립토아트 NFT와 실물 미술품 모두 개인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함
 - 독일은 실물 미술품 자본이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특례규정이 없음
- 호주는 크립토아트 NFT와 실물 미술품 모두에 대해 자산에 대한 일반 세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크립토아트 NFT가 자산 유형 중 수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 취득가격 500호주달러 이하의 수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크립토아트 NFT도 예술품으로 간주하여 수집품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함

316) 다만 디지털아트의 열람에 관한 권리의 설정으로 인한 잡소득이 업무 관련 잡소득인지 기타 잡소득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된 바 없음

〈표 V-2〉 주요국의 크립토타트 NFT 및 실물미술품 NFT 매매에 대한 소득세 과세

조사대상국	크립토타트 NFT		실물미술품 NFT	
	소득 유형	내용	소득 유형	내용
	-	[1차 거래] 디지털아트가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가능	기타소득	[1차 거래]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한국	비과세	[2차 거래] 디지털아트는 과세대상 미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하지 않음	기타소득	[2차 거래] 다음을 모두 충족한 미술품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미술품 중 회화, 테셀,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것 ·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 · 국외 원작자, 생존하지 않은 국내 원작자 작품
미국	자본이득	[1차 거래] 경상소득 ¹⁾ 또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2차 거래] 일반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규정 적용 하나 크립토타트 NFT는 수집품에 해당하지 않음 · 보유기간 1년 이상 자산의 자본이득 분류과세 · 단기 자본이득 0~35%, 장기 자본이득 0~20%	자본이득	[1차 거래] 창작자가 제작한 창작품은 경상소득으로 과세함 [2차 거래] 일반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규정 적용 · 보유기간 1년 이상 자산의 자본이득 분류과세 · 단기 자본이득 0~35%, 장기 자본이득 0~20%, 수집품 등 25% 또는 28% 세율
일본	잡소득	[1차 거래] 디지털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설정으로 봄	잡소득	[1차 거래] 창작자가 실물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잡소득으로 과세함
	양도소득	[2차 거래] 디지털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	[2차 거래] 실물 미술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생활용 동산으로서 30만엔 미만인 미술품은 과세하지 않음

〈표 V-2〉의 계속

조사대상국	크립토티아트 NFT		실물미술품 NFT	
	소득 유형	내용	소득 유형	내용
독일 ²⁾	기타소득	개인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나, 보유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0유로 미만은 비과세	기타소득	개인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나, 보유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0유로 미만은 비과세
호주 ²⁾	자본이득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자본이득이 과세될 수 있으나, 취득가액 1만호주달러 이하인 개인용 자산 또는 취득가액 500호주달러 이하인 수집품은 비과세	자본이득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자본이득이 과세될 수 있으나, 취득가액 500호주달러 이하인 수집품(미술품, 보석 등)은 비과세함(수집품은 개인용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음)

주: 1. 비상업적 매매차익에 대해 기술함

1) NFT가 창작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함

2)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여 양도하는 1차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가 취미활동에 해당하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다) 게임 NFT

- 게임 NFT 자본이득³¹⁷⁾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조사대상국은 과세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독일, 호주는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자본이득에 대한 일반 세법 규정에 의해 과세함
 - 한국에서는 현재 게임 NFT를 제공하는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어 금지되고 있으나 합법화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³¹⁸⁾
 - 게임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 미국은 P2E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 NFT가 게임 외부에서 환전이 가능한 경우 이를 세무상 자산으로 간주하여 일반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일본은 블록체인 게임을 이용하여 보상으로 취득한 게임 NFT에 대해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잡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게임 NFT가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게임 외의 자산과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취득 단계의 과세방법은 국세청 지침을 통해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나 이후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은 별도의 지침이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하나 잡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하나로 과세될 것으로 보임
 - 독일에서 게임 NFT는 암호자산처럼 개인적 자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될 것으로 보임
 - 호주는 온라인게임에서 보상으로 획득한 게임 NFT(게임 내에서 사용되며 해당 게임과 연계된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가능)에 대해 자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자본이득세 과세 규정을 적용함

317) 비사업적 매매차익에 대해 기술함

3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사행성 게임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게임 NFT를 제공하는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고 합법화 되더라도 게임아이템이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 게임아이템은 「(구)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표 V-3〉 주요국의 게임 NFT 매매에 대한 소득세 과세

국가	소득 유형	비고
한국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	· 게임 NFT가 합법화되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불확실함 · 만약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그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됨
미국	자본이득	· 가상화폐처럼 세무상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일본	잡소득	·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게임 외의 자산과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독일	기타소득	· 암호자산처럼 개인적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음
호주	자본이득	· 세무상 자산으로 간주

주: 1. 비상업적 매매차익에 대해 기술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나. NFT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1) 일반기준

- 조사대상국 모두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유권해석이나 과세지침을 통해 NFT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 다만 독일은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조사대상국은 NFT 거래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기초자산과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개별 NFT에 대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한국 과세당국은 2024년 유권해석을 통해 NFT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EC는 NFT에 대해 전자적 용역으로 간주하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고유한 암호자산으로 정의하고 NFT 거래의 실질은 기초자산에 따라 개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봄

-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는 NFT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두고 있지 않으나, 일부 주정부는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판매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 워싱턴주는 2024년 12월 NFT 관련 판매세 과세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NFT에 대한 세무처리는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봄
- 일본 국세청은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크립토티 NFT에 대한 2023년의 과세지침에 비추어 NFT에 대한 소비세 과세는 NFT 그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개별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음
- 독일은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나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해석이 마련한 바 없음
 - 다만 EU 회원국은 부가가치세를 일관되게 접근하고 있으므로 EC의 검토의견과 같이 개별 NFT의 기초자산에 따라 과세 처리할 것으로 보임
- 호주 국세청은 NFT가 부가가치세 목적상 디지털통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리는 일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표 V-4〉 주요국의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

구분	한국	EU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법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유권해석 등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교환토큰과 구분 여부	구분 ¹⁾	구분 ¹⁾	구분 ¹⁾	구분 ¹⁾	구분 ¹⁾	구분 ¹⁾

주: 1) NFT 거래는 교환토큰과 달리 NFT 자체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별 NFT가 표상하는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처리될 것으로 보임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2) NFT 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 처리

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

- 조사대상국은 모두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한국은 가상자산을 과세대상 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EU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 등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³¹⁹⁾
 - 미국 워싱턴주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부과하지만³²⁰⁾ 투자 목적 비트코인 매매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일본은 암호자산을 지급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음
 - 독일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암호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암호자산이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대체적·직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고, 지급수단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호주는 디지털통화에 해당하는 암호자산은 화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목적상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나) 크립토아트 NFT 및 실물미술품 NFT

- 조사대상국 모두 크립토아트 NFT를 무형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분류하고 실물 미술품에 제공되는 조세혜택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한국은 크립토아트 NFT의 성격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크립토아트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불분명함

319) ECJ Case C-264/14,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 해당 판결은 유럽 내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리에 대한 선도판례(Leading Case)로 분류됨

320)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유형자산의 소매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나 워싱턴주 같은 일부 주정부는 특정 용역 및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함

- EC는 크립토아트 NFT를 전자적 용역으로 보아 실물 미술품과 달리 경감세율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예술품에 대해 경감세율 및 마진과세제도 특례는 유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무형자산인 크립토아트에는 해당되지 않음
- 미국(워싱턴주)³²¹⁾은 크립토아트 NFT를 디지털자산으로 보고 판매세를 과세함
 - 유형자산인 실물 미술품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에 의해 판매세가 부과됨
- 일본은 거래 단계별 과세대상 성격을 달리 보고 있음
 - 원작자가 타인에게 디지털아트를 제공하는 1차 거래는 ‘전기통신 이용 용역의 제공’으로, 제3자 간 공급이 이루어지는 2차 거래는 ‘(디지털 아트 이용 허락에 따른) 이용권의 양도’로 분류하여 모두 소비세를 과세함
 - 참고로 일본 「소비세법」상 디지털아트 및 미술품은 비과세나 경감세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독일은 크립토아트 NFT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음
 - 다만 EU의 작업문서 검토와 같이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임
 - ‘완전히 손으로 제작된 그림·드로잉 등 미술작품, 원본 판화·조각·석판화, 조각 예술의 원작’의 공급은 경감세율 적용대상이지만, EU 작업문서 검토 결과와 같이 크립토아트 NFT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호주는 크립토아트 NFT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용역으로 분류하고 표준세율에 의해 과세할 것으로 보임
 - 호주 「부가가치세법」은 유형자산만을 재화로 보고 있으므로 크립토아트 NFT는 용역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 호주 「부가가치세법」상 디지털아트 및 실물 미술품은 면세 또는 경감세율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321) 가장 최근인 2024년 12월 NFT 관련 판매세 과세지침을 제공한 주인 워싱턴주를 기준으로 작성함

- NFT 로열티와 관련하여 미국 워싱턴주는 용역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NFT 로열티에도 판매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그 외 조사대상국에서는 NFT로열티의 성격 및 과세처리 방법이 불분명함
- 다만 EU는 실물미술품 로열티에 대해 대가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크립토아트 NFT 로열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힌 바 없으나 실물미술품 로열티와 유사하게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V-5〉 주요국의 크립토아트 NFT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크립토아트 NFT		실물 미술품
	성격	과세 여부	
한국	· 면세대상인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가 불분명함	불분명	면세
EU	· 전자적 용역 · 경감세율 대상 미술품(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세율)	과세(경감세율)
미국 ¹⁾	· 무형자산인 디지털자산의 한 종류로 봄	과세	과세
일본	· 1차 거래: 전기통신 이용 용역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 2차 거래: 이용권	과세(표준세율)	
독일	· 전자적 용역 ²⁾ · 디지털아트는 경감세율 대상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세율)	과세(경감세율)
호주	· 용역 ³⁾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주: 1)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최종 소비단계에서만 과세하는 판매세 제도를 운영하며, 유형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주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음

2) 크립토아트 NFT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EU의 작업문서를 기준으로 경감세율 대상 예술품이 아니라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임. 경감세율 대상 예술품은 완전히 손으로 제작된 그림·드로잉 등 미술작품, 원본 판화·조각·석판화, 조각예술의 원작을 말함

3) 크립토아트 NFT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지침은 없으나 유형자산만을 재화로 보고 있으므로 용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함

다. 조세행정 관련

- 조사대상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의무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NFT를 포함한 암호자산을 과세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정책을 추진함
- 한국은 2027년부터 CARF 이행을 위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조세 측면에서 NFT를 포함한 암호자산 과세정보 교환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
 - 다만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
- EU는 2026년부터 DAC8을 시행하여 EU 회원국 과세당국이 보고의무자료부터 NFT를 포함한 암호자산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매년 교환할 예정임
- 미국은 납세의무자와 디지털자산 브로커에게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거래내역 등의 보고의무를 부과함
 - 납세의무자는 연방소득세 신고 시 연중 디지털자산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디지털자산 매매 중개업자인 브로커는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다만 적격 NFT 거래³²²⁾의 경우 개별 거래 대신 합산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선택규정), 소액(연간 거래금액 600미국달러 이하) 적격 NFT 거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됨
- 일본은 납세자와 암호자산사업자에게 NFT 및 암호자산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함
 - 납세자는 NFT를 종류(아트, 음악, 스포츠, 게임 등)·용도(일반용, 사업용)·소재별로 구분해 재산채무조서를 제출해야 하며,³²³⁾ 국내 암호자산사업자는 비거주자 고객의 암호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함³²⁴⁾

322) 적격 NFT란 분할할 수 없고 고유하며 보유자에게 증권·상품·규제대상 선물계약 등에 대한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을 말함

323) 제출 시 가산세(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 5% 경감, 미제출 시 가산세 5%가 가산됨

- 독일은 납세자와 암호자산사업자에게 암호자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함
 - 납세의무자는 암호자산에 대한 세무신고 및 기록·보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DAC8 이행을 위한 법률안 공포를 통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실사 및 보고의무, 보고된 정보의 자동 교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
 - 암호자산에는 탈중앙 발행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전자화폐토큰, NFT까지 포함됨
- 호주는 납세자 등에게 NFT를 비롯한 암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11월, CARF 이행을 위한 입법 준비 중에 있음

324)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Ⅵ. 결론 및 시사점

1. NFT의 분류

가. 규제 측면

-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대상국 모두 NFT는 가상자산과 구별된 별도의 것으로 보고 있음
 - NFT와 가상자산은 기술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성질 및 활용 유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 규제기관은 가상자산과 NFT를 구분하고 있음
 - NFT는 고유성·희소성이 강하고 특정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대체성·유동성 중심이며 결제·가치 저장 성격이 강함

-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대상국은 가상자산과 비교할 때 NFT의 금융규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NFT를 규율하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음
 - 예를 들어 EU는 MiCA를 통해 전통적 금융체계에 속하지 않는 암호자산을 규율하고 있으나 NFT는 금융시스템과 보유자에 대한 위험이 제한적이어서 MiCA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규제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조세 측면

- NFT 과세를 위해서는 NFT의 가치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NFT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³²⁵⁾
 - NFT가 기초자산과는 별도의 독립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NFT의 가치는 기초자산의 가치와 NFT라는 매개체 가치의 복합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NFT가 증명서와 같은 수단에 불과하다면 NFT의 가치는 기초자산의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NFT는 새로운 자산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므로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으나 그 가치가 제한적이므로, 과세는 기초자산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 NFT는 기초자산과 NFT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NFT 자체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NFT와 기초자산을 동일시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할 것임
 - 같은 맥락에서 조사국 중 미국은 소득과세 시에 ‘투과접근법’에 의해 NFT를 검토할 것으로 밝힘

- 따라서 NFT에 한정되는 별도의 조세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NFT 기초자산의 성질에 따라 사안별로 과세를 달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³²⁶⁾
 - NFT는 가상자산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디지털자산으로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원화된 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 또한 NFT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실질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규제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선의 대상인 것으로 밝힘³²⁷⁾

325) Gheorghiu(2023), p. 96.

326) 같은 뜻, 김영순(2022), p. 502.

327)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11.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보도설명자료, 2021. 11. 23., <https://www.fsc.go.kr/no010102/7693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 검색일자: 2025. 7. 23.

- NFT가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과 같이 별도의 'NFT 소득' 조항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NFT는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가치를 가지게 되므로 NFT를 도관으로 보아 기초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 조사된 주요국 모두 NFT에 한정된 별도의 과세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NFT가 수단에 해당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됨
- 조사대상국인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모두 NFT와 관련된 별도의 과세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2. NFT의 소득과세

- NFT가 증권 또는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법」상 독자 기준이 아닌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증권형 NFT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현행 「소득세법」상 증권과 가상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기준이 적용될 것임
-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및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관련 법령에 의함
- 만일 증권형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며,³²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될 것임
- 대표적 NFT 유형인 크립토타트 NFT의 매매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을 것이며, 실물 예술품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소득세법」상 미술품은 유형성을 전제로 입법되어 있으므로 크립토타트 NFT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8)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3, 제5호의4

- 일반적으로 크립토아트 NFT의 매매가격이 실물 예술품에 비해 낮으므로 현 단계에서 조세형평성 문제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디지털아트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³²⁹⁾ 크립토아트 NFT 과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일부 크립토아트 NFT는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 실물 예술품 대비 낮으며, 실물 미술품도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 및 기술중립적 세제의 운용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게임 NFT는 높은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세법상 성격 및 과세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게임 NFT의 합법화 이전 단계에서 과세체계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요구됨
 - 우리나라는 자본이득 과세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 반면 조사대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본이득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 NFT 매매 차익의 과세처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미국, 독일, 호주는 자본이득 과세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함
 - 일본의 게임 NFT 매매 차익의 소득유형에 대한 지침은 확인되지 않으나 매매 차익은 잡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것임³³⁰⁾

- 그 외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회원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NFT, 수집품 NFT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이들의 과세 여부 및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NFT 기술의 도입으로 과거에는 유통이 제한적이었던 유틸리티 NFT, 수집품 NFT 등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

329) 한국저작권위원회(2025), p. 20.

330) 일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잡소득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포괄적으로 포섭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유틸리티 NFT는 일종의 회원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그 매대 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는 없음
 - 유틸리티 NFT는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이용권 중에서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과 같은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음
 - 응능과세원칙상 이들에 대한 과세는 타당할 것이나 다른 비과세 자산과의 비교를 통해 과세 여부 및 과세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됨
- NFT의 활용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신규 유형의 자산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상기한 크립토포아트 NFT, 게임 NFT, 수집품 NFT 등의 과세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소득세법」이 자본이득에 대해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함
 - 반면 조사대상국은 자본이득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공백이 없음
 - 장기적으로는 현행 자본이득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방식에서 포괄방식으로의 개정을 통한 과세 기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³³¹⁾
- 한편 NFT의 기초자산이 다수인 경우, 세무처리는 주된 재화 또는 권리를 기준으로 하는 이분법적 구분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 NFT 기초자산 자체가 세법상 과세방식의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소득과세 방법이 불분명함
 -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또는 적용세율이 상이한 자산 또는 권리 등으로 NFT 기초자산이 여러 유형의 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음

331) 오윤(2021), p. 3.

- 예를 들어 NFT의 기초자산이 과세대상인 실물 미술품과 비과세대상인 디지털 아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일괄 공급 시의 양도가액 안분규정³³²⁾을 준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개별 자산·권리의 가치 비율에 의한 안분은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며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된 재화 또는 권리를 기준으로 한 이분법적 구분이 바람직할 수 있음³³³⁾

3. NFT의 부가가치세 문제

-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증권형 NFT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NFT는 증권 및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유가증권과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음³³⁴⁾
- 반면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NFT의 세무처리 방법은 가상자산과는 달리 개별 NFT의 기초자산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NFT는 기초자산을 전달하는 일종의 증명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초자산 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가상자산과는 「부가가치세법」상 처리가 상이함
 - 조사대상국 또한 NFT와 지급결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교환토큰)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를 달리하고 있음
 - EU, 미국 워싱턴주, 일본은 지급결제 수단의 성격이 있는 가상자산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지만, NFT는 기초자산의 성격에 비추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332)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333) ABA(2023), pp. 17~19.; AICPA(2023), pp. 7~8.; NYSBA(2023), pp. 19~22.

334) 서삼46015-10926, 2002. 5. 3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 크립토아트 NFT에 대해서는 실물 미술품에 대해 적용되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술중립성 원칙을 고려할 때 크립토아트 NFT 역시 면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 현재의 부가가치세제는 유형자산 거래를 전제로 제정되어 제반기술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EU는 예술품에 대한 조세혜택(경감세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형성이 없는 크립토아트 NFT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크립토아트 NFT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기술발전에 따른 예술 표현 수단의 다양화를 고려할 때, 기술중립성 차원에서 크립토아트 NFT에 대해서도 실물 미술품에 적용되는 조세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창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 및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예술창작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크립토아트 NFT와 실물 미술품은 표현수단의 차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크립토아트 NFT의 창작자가 2차 매매 시 수령하는 NFT 로열티의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NFT 로열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추급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급권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공급시기, 공급자,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추급권 관련 이슈는 현재 크립토아트 NFT에 한정되어 있으나 2027년 이후에는 실물 미술품의 거래 시에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됨

4. 조세행정 관련

- 우리나라는 현재 증권 및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2026년 이후부터는 NFT 관련 과세정보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NFT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교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NFT와 관련된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
 - OECD는 암호자산 관련 역외탈세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7년 이행을 목표로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를 추진 중에 있음
 - CARF가 시행되는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주자의 NFT 등의 거래정보를 획득하게 되며 국내 거래소로부터 거주자·비거주자의 NFT를 포함한 거래정보를 제출받게 됨
- 참고로 조사대상국 중 미국, 일본은 CARF와는 별도로 비트코인 등과 같은 교환토큰 이외에 NFT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우고 있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동익·홍성희·박수진, 『가상자산 및 디파이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김문정·이형민·김수린,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 배당과세제도와 자본이득과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관계부처 합동, 「웹3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2022.
- 권민, 『미술과 세금』, 바른북스, 2024.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 길용원, 「NFT(Non-Fungible Token)와 게임산업법상 경품제공금지에 관한 연구 -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판결을 중심으로-」, 『가천법학』, 제17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pp. 163~196.
- 김갑래,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이슈보고서, 제22권 제23호, 자본시장연구원, 2022, p. 12.
- 김갑래·황세훈, 「미국 트럼프 행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이슈보고서, 제25호 제1호, 자본시장연구원, 2025, pp. 8~11.
- 국중호,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 - 부가가치세,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김소연, 「베른 협약의 추급권 조항의 국내 입법과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김영순, 「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사법』 통권 제62호, 제1권 제62호, 사법발전재단, 2022, pp. 489~526.
- _____, 「디지털 시대의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방안 - AI의 예술 산출물, 아트 NFT, 미술

- 품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38호, 제13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2024, pp. 125~177.
- 김우성,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제64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pp. 129~181.
-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 - 부가가치세, 독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김종호, 「대체불가능 디지털 토큰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pp. 205~252
- 금융위원회,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2023. 2. 6.
- _____,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 6. 11.
- 류경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최근 규제 현황 및 시사점: 투자계약과 관련한 미국 하급심 법원의 판단 및 FIT21 법안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통권 제53호, 제21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24, pp. 9~55.
- 문명섭·전정화·김혜정, 『지식재산 관점의 NFT 활용 및 핵심쟁점 분석 연구』, 특허청 위탁 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 박경신·오진해·임형주·전재립, 『NFT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 박수영, 「일본에서의 NFT에 대한 법적 논의의 현황 - 금융규제의 여부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pp. 1~21.
- 박훈, 『미국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신상화·송은주·이서현, 『미술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오윤, 「자본이득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제언」, 『재정포럼』, 제297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pp. 2~6.

- 유민호·임동민·아곤·한서희, 『NFT 투자의 정석』, 한스미디어, 2022.
- 유의정,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p. 2.
- 이경미·정순섭·이동진·박상철,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I):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 및 규율체계 방향 모색』,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 이시한, 『NFT의 시대』, 다산북스, 2022.
- _____, 『새로운 부의 기회 NFT』, 넷마루, 2023.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4.
- 이호·이지운·조유현, 「NFT산업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 뉴스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24, pp. 345~365.
- 자본시장연구원,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동향」, 『자본시장포커스』, 제14호, 2025.
- 장세형·성필규·이진석, 『한 권의 디지털 자산』, 프리렉, 2024.
- 최정희,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 - 부가가치세, 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한국저작권위원회, 「NFT로 고객 로열티 향상 추구하는 스타벅스」, 『저작권 이슈 브리프』, 2024-2-4호, 2024a.
- _____, 「NFT 접목한 디지털 아트 시장 현황과 전망」, 『저작권 이슈 브리프』, 2024-9-2호, 2024b.
- _____, 「K팝 산업, AI 및 블록체인 기술 재도입 움직임」, 『저작권 이슈 브리프』, 2024-6-3호, 2024c.
- _____, 「제너레이티브 아트의 성장과 저작권 보호의 진화」, 『저작권 이슈 트렌드』, 제54호, 202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제1권』, 2019.
- _____,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제2권』, 2020.
- 한서희, 「대체불가토큰(NFT)과 법률적 쟁점」,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권 제2호, 한국 법제연구원, 2022, pp. 26~52.
- 한지영, 「메타버스와 NFT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80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5, pp. 369~427.

홍병진·박수진·김민경,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 EU의 법적 프레임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a.

홍병진·박수진·김혜림, 『일본 디지털자산의 과세제도 조사 및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b.

〈외국 문헌〉

国税庁, 「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 2023a.

_____, 「暗号資産等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 (情報)」, 2023b.

_____, 「財産債務調書制度 (FAQ)」, 2023c.

金融庁, 「第三分冊: 金融会社関係: 16. 暗号資産交換業者関係」, 2023.

_____, 「暗号資産に関連する制度のあり方等の検証」, 2025.

金子 宏, 『租税法 第24版 (法律学講座双書)』, 弘文堂, 2021.

大石篤史, 増田雅史, 間所光洋, 緒方 航, 原田 昂, 「私法上の法律関係に即した課税論から国
税庁「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を読み解く」, 『NBL』, No.1242, 2023,
pp. 34~40.

泉 絢也, 「NFT (ノンファンジブルトークン) の譲渡による所得は譲渡所得か? もしそうで
あれば非課税所得か?—NFT の「生活に通常必要な動産」該当性—」, 『千葉商大論叢』,
第59巻 第3号, 2022, pp. 143~174.

ABA, “Re: Comments on Notice 2023-27,” 2023.

Abbott, Billy, “The Anything Asset: The Tax Classification of Cryptocurrency,
NFTs, DAOs and Other Digital Assets,” *Chapman Law Review*, 26(2),
Fowler School of Law at Chapman University Digital Commons, 2023,
pp. 459~502.

AICPA, “Re: Notice 2023-27 on Non-Fungible Tokens(NFTs),” 2023.

Arredondo, Devyn Darius, “Collectibles Tax and the Art of Buying, Renting,
and Selling Virtual Land NFTs,” *Arizona Law Review*, 66(2), 2024, pp.

505~526.

Behrendt, Philipp, "Taxation of the New Age: New Guidance for the World of Digital Assets," *Journal of Tax Practice & Procedure*, 25, CCH, Inc., 2023, pp. 47~58.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inzelfragen zur ertragsteuerrechtlichen Behandlung bestimmter Kryptowerte," 2025a.

Cannas, Francesco and Rosella Spada, "The VAT Treatment of Crypto Art: Between NFTs, Smart Contracts and the Metaverse: How a Bundle of New Concepts Can Fit into the Existing Categories," *Intertax*, 52(1), 2024, pp. 60~71.

Deschâtres, Iman and JP McCarthy, "The Indirect Taxation of NFTs," *International VAT Monitor*, 33(5), IBFD, 2022, pp. 193~194.

Dimita, Gaetano, Yin Harn Lee, Michaela MacDonald, Anthony Michael Catton, Zeynep Kubra Kavcar Penbegullu, and Juan Alberto Pulido Lock, "IP and Metaverse(s)-an externally commissioned research report,"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4.

Dollenmayer, Ian, "A New Economic Frontier and Ohio's Old Tax: Analyzing the Taxability of NFTs under Ohio's Sales and Use TAX," *Capital University Law Review*, 51(1), 2023, pp. 1~26.

ESMA, "Final Report Guidelines on the conditions and criteria for the qualification of cryptoassets as financial instruments," 2024.

European Commission, "Initial VAT reflections on non-fungible tokens," Working Paper, No. 1060, 2023.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24*, 2024.

Gheorghiu, Laura, "Policy Forum: Non-Fungible Tokens and Their Income Tax Treatment," *Canadian Tax Journal*, 71(1), 2023, pp. 83~99.

House of Commons, "NFTs and the Blockchain: the risks to sport and culture,"

- Fourteenth Report of Session 2022-23, 2023.
- House of Representatives,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S AND DEBATES OF THE 118TH CONGRESS, SECOND SESSION*, Vol. 170, No. 89, 2024.
- KPMG, “Accounting for NFTs,” Issues In-Depth, 2024.
- KPMG and SFA, “The Asset Tokenization C-Suite Playbook,” 2024.
- Morton, Elizabeth F. and Michael F. Curran, “Understanding Non-Fungible Tokens and the income tax consequences,” *Journal of Tax Administration*, 9(1), 2024, pp. 6~49.
- Moskat, Roland and Ruediger Schaar, “Kryptokunst eine teuerliche Einordnung,” *Der Betriebs Berater*, 01/02, 2022.
- NYSBA, “Report on Notice 2023-27 and Nonfungible Tokens(NFTs),” 2023.
-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2023 update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3.
- The Board of Taxation, *Review of the tax treatment of digital assets and transactions in Australia*, 2024.

〈웹사이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index.do>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
-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 일본 금융청, <https://www.fsa.go.jp>

독일 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

독일 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gesetze-im-internet.de/index.html>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호주 연방재무부,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

HAUFE, <https://www.haufe.de>

IBFD, <https://research.ibfd.org>

PWC, <https://www.PWC.com>

EY, <https://www.ey.com>

KPMG, <https://kpmg.com>

세법연구 25-02
디지털자산 시대의 NFT 과세제도

발행 2025년 9월 30일
저자 김문정 · 홍성희 · 박하영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ISBN 979-11-6655-369-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